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26호

2017. 9. 7.(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6606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3

[입법예고]

제2017-1986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

제2017-1987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

◆ 고 시

제2017-315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6

제2017-316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7

제2017-317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9

제2017-318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10

제2017-319호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
계획구역6(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1

제2017-320호 목제1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7

제2017-322호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35

◆ 공 고

제2017-1939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53

제2017-1964호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공고 53

제2017-1966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55

제2017-1969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56

제2017-1970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74

제2017-1971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75

제2017-1984호 「서울특별시 OO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행정예고 76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7-6호 재산등록사항공개 공고 84

◆ 구 고 시

제2017-11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중복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북구)	88
제2017-118호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강북구)	89
제2017-108호 도시계획시설(초안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도봉구)	94
제2017-65호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관악구)	99
제2017-94호 도시계획시설(말죽거리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서초구)	99
제2017-12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세곡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 고시(강남구) ..	100

◆ 사업소고시

제2017-17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02
제2017-18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02
제2017-18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03
제2017-18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03
제2017-18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04

◆ 사업소공고

제2017-10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강북소방서)	105
--------------------------------------	-----

◆ 기 타

제2017-183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06
--	-----

자 치 법 규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6606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

서울특별시회의의장 양 준 욱 인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횡단보도 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상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는 횡단보도 쉼터를 도로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추가하여 횡단보도 쉼터의 설치 및 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종류에 ‘횡단보도 쉼터’를 추가함.(안 제2조제5호)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986호****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주요 시책 추진 전담기구 마련을 위한 부서 및 사업소 신설, 기능 강화 필요 분야 소관업무 정비 등 기구조정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주요 시책 추진력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 정비

- ‘서울형 참여예산제도’ 실행력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예산과 재편
- 홍릉바이오 클러스터, G밸리 등 경제거점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신성장산업과 재편
- 100주년 전국체전 개최 준비를 위한 전국체전기획과 신설
- 기록물 수집·보존 및 시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울기록원 신설

나. 현안 반영 소관업무 조정 및 유관 기관 변동사항 현행화

- 봉제산업 총괄기능 부여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업무 명확화
-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업무 부여
- 정부부처 변동 사항(국민안전처 폐지, 행정안전부 통합) 반영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2133-6732, FAX: 2133-0822, E-mail: jspark37@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987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기구신설 및 시정 주요사업 추진력 강화 등을 위해 총 정원을 17,603명에서 17,771명으로 168명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장 인력 보강 및 주요사업 성과창출을 위한 증원

- 소방·간호·아동보육 등 안전·복지 분야 인력 보강(+111명)
- 신규시설 건립, 전국체전 개최 준비 등 현안시책 추진인력 보강(+57명)

나. 행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직급 조정 및 인력 이관

- 서울대공원 사육기능 강화 및 물재생센터 하수처리 고도화를 위한 직렬 조정(6명)
- 서울로 기능보강, 하수도사업 기업회계 전환을 위한 직렬조정 및 인력이관(4명)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2133-6732, FAX: 2133-0822, E-mail: jspark37@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15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내 체육시설을 신설하여 주민의 여가생활 지원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체육 시설	체육관 (다목적)	영등포구 도림동 254번지		증)4,591	4,591	-	유수지 중복결정

나. 건축물의 범위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비고
신설	체육시설	체육관(다목적)	4,591	60 이하	80 이하	3층 이하	

다. 결정사유서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체육시설	○다목적체육관 신설 - 4,591㎡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내 체육시설을 신설하여 주민 복지증진 및 토지이용 효율화

라. 지형도면 : 불임참조

※ 불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08) 및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2670-3550)에 각각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16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중량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장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서울특별시청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2.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중량물재생센터의 기존 처리공정을 개선하여 중량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함으로써, 방류수역의 수질환경 보전 및 공중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임.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일대(변경사항 없음)
- 면 적 : 801,000㎡(변경사항 없음)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구분	시설의 종류	명 칭	시설용량 및 처리공법	3차 처리시설	
				시설종류	처리능력
당초	공공하수 처리시설	중량 물재생센터	○ 1,590,000㎥/일 - 표준활성법: 100,000㎥/일 - 고도처리(MLE): 780,000㎥/일 - 고도처리(A2O): 460,000㎥/일 - 고도처리(SBAF): 250,000㎥/일	-	-
변경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총인처리시설	1,590,000㎥/일 (혼화처리)

※ 총인처리시설

- 중량천 유지용수 공급시설의 총인처리시설(기 설치) : 460,000㎥/일
- 시설현대화 사업의 총인처리시설(설계변경 추가) : 250,000㎥/일
-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별도사업 시행) : 880,000㎥/일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

- 배수구역 ; 중량, 뚝도, 청계
- 하수처리구역 : 동대문·중량·성북·노원·강북·도봉·광진구 전역, 종로·중구·성동 및 의정부시 일부

6.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 2030하수도정비 기본계획
- 2019년까지 총인처리시설 설치완료

7. 사업시행기간 : 2015. 7월 ~ 2019.12월

8.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금회 변경사항 없음(생략)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금회 변경사항 없음(생략)

10. 기타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02-2133-3824)와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02-3708-87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17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탄천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2.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탄천물재생센터의 기존 처리공정을 개선하여 탄천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함으로써, 방류수역의 수질환경 보전 및 공중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임.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변경사항 없음)
- 면 적 : 393,000㎡(변경사항 없음)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구분	시설의 종류	명 칭	시설용량 및 처리공법	3차 처리시설	
				시설종류	처리능력
당초	공공하수 처리시설	탄천 물재생센터	○ 900,000㎥/일 - 고도처리(MLE): 900,000㎥/일	-	-
변경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총인처리시설	900,000㎥/일 (혼화처리)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

- 배수구역 : 탄천, 성내
- 하수처리구역 : 강동·송파 전역과 강남·서초·하남 및 과천시 일부

6.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 2030하수도정비 기본계획
- 2019년까지 총인처리시설 450,000㎥/일 설치

7. 사업시행기간 : 2015. 7월 ~ 2019.12월

8.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금회 변경사항 없음(생략)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금회 변경사항 없음(생략)

10. 기타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02-2133-3824)와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02-3708-87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18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서남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2.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서남물재생센터의 기존 처리공정을 개선하여 서남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함으로써, 방류수역의 수질환경 보전 및 공중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임.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변경사항 없음)
 - 면 적 : 1,032,000㎡(변경사항 없음)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구분	시설의 종류	명 칭	시설용량 및 처리공법	3차 처리시설	
				시설종류	처리능력
당초	공공하수 처리시설	서남 물재생센터	○ 1,630,000㎥/일 - 표준활성법: 120,000㎥/일 - 고도처리(MLE): 1,150,000㎥/일 - 고도처리(BNR): 360,000㎥/일	-	-
변경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총인처리시설	1,630,000㎥/일 (혼화처리)

※ 총인처리시설

- 시설현대화 사업의 총인처리시설(설계변경 추가) : 360,000㎥/일
-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별도사업 시행) : 1,270,000㎥/일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
 - 배수구역 : 반포, 노량진, 안양천, 강서
 - 하수처리구역 : 영등포·관악·동작·구로·양천·금천·강서 전역과 강남·서초 일부 및 광명시 일부
6.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 2030하수도정비 기본계획
 - 2019년까지 총인처리시설 설치완료

7. 사업시행기간 : 2015. 9월 ~ 2019.12월
8.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금회 변경사항 없음(생략)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금회 변경사항 없음(생략)
10. 기타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02-2133-3824)와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02-3708-861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19호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6(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2011.06.23)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특별계획구역6(개포주공5단지아파트-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7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7.05.17)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특별계획구역6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취지

- 2011년 10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결정(변경)되고, 2015년 07월 주민제안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6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II.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다. 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 1) 교통시설
 - ① 도로

■ 도로총괄표(변경)

구분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54	26,384	697,506.8	16	10,234	439,531.1	17	7,835	170,821.5	21	8,315	87,154.2
	변경	54	25,691	691,226.1	16	10,234	439,154.4	17	7,442	164,926.5	21	8,315	87,154.2
광로	기정	4	7,957	359,769.4	2	3,470	282,497.0	1	1,639	65,880.4	1	2,848	11,392.0
대로	기정	4	4,223	128,755.0	1	1,464	51,487.0	1	612	18,360.0	2	2,147	58,908.0
중로	기정	18	9,254	176,921.9	7	4,208	94,604.7	10	4,881	80,441.0	1	165	1,876.2
	변경	18	8,861	170,641.2	7	4,208	94,219.0	10	4,488	74,546.0	1	165	1,876.2
소로	기정	28	4,650	32,060.5	6	1,092	10,942.4	5	703	6,140.1	17	3,155	14,978.0

※ 상기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해당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403	24	국지 도로	636	광로1-72	대로1-20	일반 도로	-	-	삼성로4길
변경	중로	1	403	22~24	국지 도로	636	광로1-72	대로1-20	일반 도로	-	-	선형변경
기정	중로	2	242	15	국지 도로	678	광로1-72	중로1-230	일반 도로	-	건고시388호 (84.09.28)	개포로 88길
변경	중로	2	242	15	국지 도로	285	중로1-403	중로1-230	일반 도로	-		선형변경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1-403	중로 1-403	• 선형변경 및 일부구간 도로 축소(폭24m→폭22m)	• 5단지 구역정비 및 구역내 보도개설에 따른 선형변경 및 구역내 도로폭 축소
중로 2-242	중로 2-242	• 선형변경 및 연장축소 (678→285m)	• 불합리한 도로교차 구조개선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

※ 상기 변경시설을 제외한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타 도로시설은 변경없음

2) 공간시설

① 공원

■ 공원 총괄표

구분		기정		변경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18	476,315.0	21	480,323.0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14	467,192.2	14	467,192.2
	어린이공원	3	4,650.9	3	4,650.9
	소공원	-	-	1	851.5
주제공원	문화공원	1	4,471.9	1	4,471.9
	가로공원	-	-	2	3,156.5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5	개포25	소공원	개포동187	-	증) 851.5	851.5	-	6·7단지 경계부
신설	26	개포26	가로공원	개포동187	-	증) 1,637.3	1,637.3	-	북측상업 지역경계부
신설	27	개포27	가로공원	개포동187	-	증) 1,519.2	1,519.2	-	북측상업 지역경계부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㉕	개포25	• 신설 : 851.5㎡	• 주요 통경축변 및 도로교차 결절부 보행 집결점에 소공원 설치
㉖	개포26	• 신설 : 1,637.3㎡	• 북측상업지역과 연계한 가로공원 조성으로 보행자 편의 · 휴식공간 제공
㉗	개포27	• 신설 : 1,519.2㎡	• 북측상업지역과 연계한 가로공원 조성으로 보행자 편의 · 휴식공간 제공

※ 상기 변경시설을 제외한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타 공원, 녹지시설은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결정
(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변 경	
도로 신설	특별 계획 구역	• 개원길 일부구간 신설(주공1단지) : 폭 24m • 상업지변 도로 신설(주공5단지) : 폭 10m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우성4차, 주공1단지, 일원현대) : 폭 8m • 보행자우선도로 신설(주공 1단지, 공무원9단지, 일원대우) : 폭 8m	• 개원길 일부구간 신설(주공1단지) : 폭 24m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우성4차, 주공1단지, 일원현대) : 폭 8m • 보행자우선도로 신설(주공 1단지, 공무원9단지, 일원대우) : 폭 8m	결정도 참조 (규제)
도로 확폭	특별 계획 구역	• 단지진출입 등을 위한 완화차로 확보 : 폭 3m • 선릉로 일부구간 확폭 : 폭 20m→폭 25m • 개포동길 도로확장 가능구간 확폭 : 폭 3m • 개원길 도로확폭 : 폭 15m→폭 24m • 보행자우선도로 확폭 : 폭 2m • 일부구간 도로 확폭 : 폭 3m	• 단지진출입 등을 위한 완화차로 확보 : 폭 3m • 선릉로 일부구간 확폭 : 폭 20m→폭 25m • 개포동길 도로확장 가능구간 확폭 : 폭 3m • 개원길 도로확폭 : 폭 15m→폭 22~24m • 보행자우선도로 확폭 : 폭 2m • 일부구간 도로 확폭 : 폭 3m	가로변 주요 교차부 결정도 참조 (규제)
노선 변경	특별 계획 구역	• 개원길 동서간 연결 및 선형개선 : 폭 24m	• 개원길 동서간 연결 및 선형개선 : 폭 22~24m	주공1단지 동서간 연결 도로 신설 주공4단지 도로선형개선 (규제)

※ 상기 변경내용이외는 변경사항없음

3)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4) 경관 및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6	강남구 개포2동	55,858.0	-	55,858.0	주공5단지	공동개발권장 (면적:172,510.0㎡)
	특별계획구역7	강남구 개포2동	57,851.0	-	57,851.0	주공6단지	
	특별계획구역8	강남구 개포2동	54,545.0	-	54,545.0	주공7단지	
변경	특별계획구역6	강남구 개포2동	55,858.0	증)315.2	56,173.2	주공5단지(개포동187-1번지 포함)	공동개발권장 (면적:116,652.0㎡)
	특별계획구역7	강남구 개포2동	57,851.0	-	57,851.0	주공6단지	
	특별계획구역8	강남구 개포2동	54,545.0	-	54,545.0	주공7단지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특별계획구역 6	• 공동개발권장계획 삭제 • 공동개발면적 변경 : 55,858㎡→56,173.2㎡ - 증)315.2㎡	• 도시계획도로로 구분된 독립된 단지로 5단지 /6,7단지 별도로 준비위구성 개별 사업추진 • 대지 및 기반시설 형상 정형화를 위한 개포동 187-1번지 포함정비	주공 5단지
특별계획구역 7,8	• 공동개발면적 변경 : 172,510.0㎡→116,652.0㎡ - 감)55,858㎡	• 5단지 분리개발에 따른 공동개발면적 변경	주공 6,7단지

2)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단지별 지구단위계획 내용

■ 특별계획구역6,7,8(기정) - 주공5,6,7단지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185, 개포동 187	
특별계획구역 면적			• 172,510.0㎡ (주공5단지-55,858.0㎡, 주공6단지-57,851.0㎡, 주공7단지-54,545.0㎡, 추가대지-2,348.0㎡, 기존 도로-1,908.0㎡)	
획지(계획대지) 면적			• 158,849.0㎡	
공공시설 면적			• 13,661.0㎡	
공공시설 비율			• 기부채납(순부담) 비율 6.8% 내외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공기반시설 계획			• 기존 공공기반시설(도로) 면적 : 1,908㎡ • 기부채납(순부담) 공공기반시설 면적 : 11,753㎡ - 공원 1개소(개포동길변)(면적 : 1,520㎡) 계획 - 연결녹지 폭12m(영동대로변)(면적 : 2,984㎡) 계획 - 광장 1개소(대모산입구역)(면적 : 738㎡) 계획 - 도서관 부지(면적 : 286㎡) 계획 - 폭10m 도로(상업지변) 계획 및 개원길 · 삼성로 · 개포동길 · 영동대로변 가 감속차로 설치(면적 : 6,225㎡) ※공공기반시설면적은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변경될 수 있음	지침도에 따름 : 향후 세부 개발계획(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규정 준용	
		A 허용용도 a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건폐율	허용용도 a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50% 이하	
		기준용적률	• 210% 이하	
		허용용적률	• 230% 이하	
	높 이	상한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35층 이하 • 저층구간(7층 이하) : 개원길변 폭25m • 저층구간(10층 이하) : 주공 5,6단지변 폭30m	
배치	건축한계선		• 삼성로변 : 8m • 개원길변, 북측 상업지역변, 개포동길변 : 6m • 개원길변 건축물의 저층부(3층이하)의 용도가 주민편의시설 (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인 경우 : 건축지정선 3m	지침도에 따름 : 공공기반 시설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라 계획결정
	통경구간		• 주공 6단지변 : 폭 15m	
기타에 관한 사항	경 관		• 경관체크리스트 준용	
	보행동선		• 개원길~중앙광장~북측상업시설 및 개포동길을 연계하는 남북보행동선 조성 • 주공 5단지 중앙광장~주공 7단지중앙광장으로 연계되는 동서 보행동선 조성	
	차량동선		•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자전거도로		• 영동대로변(폭3m이상) 및 삼성로변(폭1.5m이상)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 개원길, 개포동길변 및 통경구간내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조성(폭1.5m이상)	
	근린광장		• 단지내 근린광장 2개소 조성	
	쌈지형공지		• 삼성로변 교차부 쌈지형공지 조성	

※ 법정 상한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 및 관련법령과 기준을 우선 적용함

※ 공동개발추진이 무산되어 개별구역별로 개발을 진행할 때에는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반시설 및 지침 등을 각 개별구역에 맞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 보행동선 · 근린광장 · 쌈지형공지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변경할 수 있음

※ 소형주택(임대주택)은 정비계획 수립시 규모를 다양하게 계획(예시 : 주거전용면적 40㎡~59㎡)

※ 부분임대아파트 확보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입하여야 하며, 비율은 60~85㎡, 85㎡이상 세대수의 20%이상 확보하는 것을 권장

※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관련법에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함

※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에 따름

■ 특별계획구역6(변경) - 주공5단지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187, 개포동187-1	
특별계획구역 면적			• 56,173.2㎡ (주공5단지-55,858.0㎡, 현황도로-315.2㎡)	
획지(계획대지) 면적			• 51,036.5㎡	
공공시설 면적			• 5,136.7㎡	
공공시설 비율			• 기부채납(순부담) 비율 8.5% 내외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공기반시설 계획			• 기존 공공기반시설(도로) 면적 : 315.2㎡ • 기부채납(순부담) 공공기반시설 면적 : 4,821.5㎡ - 공원 3개소(개포로88길-개원길교차부 소공원(1개소), 북측상업지역연계 가로공원(2개소))(면적 : 4,008㎡) 계획 - 폭15m 도로(개포로88길) 선형 변경설치(면적 : 1,128.7㎡) ※공공기반시설면적은 세부개발계획변경결정 또는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침도에 따 름 : 향후 세 부 개발계획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 립시 도시계 획 시설 결정
건축물의 용도·밀 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규정 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허용용도 a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 률	기준용적률	• 210% 이하	
		허용용적률	• 230% 이하 (적용 227%)	
		상한용적률	• 250% 이하 (적용 250%)	
	높 이		• 최고층수 35층 이하 • 저층구간(7층 이하) : 개원길변 폭27.5m • 저층구간(10층 이하) : 주공 5,6단지변 폭30m	
배치	건축한계선	• 삼성로변 8m, 개원길변, 개포로88길변 : 6m • 개원길변 건축물의 저층부(3층이하)의 용도가 주민편의시설(상가, 부대복리시설 등) 인 경우 : 건축지정선 3m	지침도에 따 름 : 공공기 반 시설의 도 시계획 시설 결정에 따라 계획결정	
	통경구간	• 주공 6단지변 : 폭 15m		
기타에 관한 사항	경 관		• 경관체크리스트 준용	
	보차혼용통로		• 북측 상업지역변 폭원 10m 보차혼용통로 조성	
	보행동선		• 개원길~중앙광장~북측상업시설 및 개포동길을 연계하는 남북보행동선 조성 • 삼성로변~주공 5단지 중앙광장~주공 6단지광장으로 연계되는 동서 보행동선 조성	
	차량동선		•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자전거도로		• 삼성로변(폭1.5m이상)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 개원길, 개포동길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조성(폭1.5m이상)	
	근린광장		• 단지내 근린광장 1개소 조성	
	쌈지형공지		• 삼성로변 교차부 쌈지형공지 조성	

-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 및 관련법령과 기준을 우선 적용함
 ※ 소형주택(임대주택)은 정비계획 수립시 규모를 다양하게 계획(예시 : 주거전용면적 40㎡~59㎡)
 ※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관련법에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함
 ※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에 따름

■ 특별계획구역 7,8(변경) - 주공 6,7단지

구 분 위 치			계 획 지 침	비 고
			• 강남구 개포동 185	
특별계획구역 면적			• 116,652㎡ (주공6단지-57,851.0㎡, 주공7단지-54,545.0㎡, 추가대지-2,348.0㎡, 기존 도로-1,908.0㎡)	
획지(계획대지) 면적			• 107,346㎡	
공공시설 면적			• 9,306㎡	
공공시설 비율			• 기부채납(순부담) 비율 6.8% 내외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공·기반시설 계획			• 기존 공공·기반시설(도로) 면적 : 1,908㎡ • 기부채납(순부담) 공공·기반시설 면적 : 7,398㎡ － 공원 1개소(개포동길변)(면적 : 1,520㎡) 계획 － 연결녹지 폭12m(영동대로변)(면적 : 2,984㎡) 계획 － 광장 1개소(대모산입구역)(면적 : 738㎡) 계획 － 도서관 부지(면적 : 286㎡) 계획 － 개원길 · 개포동길 · 영동대로변 가감속차로 설치(면적 : 1,870㎡) ※ 공공·기반시설면적은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변경될 수 있음	지침도에 따 름 : 향후 세 부 개발계획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 립시 도시계 획 시설 결정
건축물의 용도·밀도 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규정 준용	
		허용용도 a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용적률	건폐율	• 50% 이하	
		기준용적률	• 210% 이하	
		허용용적률	• 230% 이하	
		상한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35층 이하 • 저층구간(7층 이하) : 개원길변 폭25m • 저층구간(10층 이하) : 주공 6단지변 폭30m	
배치	건축한계선	• 개원길변, 북측 상업지역변, 개포동길변 : 6m • 개원길변 건축물의 저층부(3층이하)의 용도가 주민편의시설 (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인 경우 : 건축지정선 3m	지침도에 따 름 : 공공·기 반 시설의 도 시계획 시설 결정에 따라 계획결정	
	통경구간	• 주공 6단지변 : 폭 15m		
기타에 관한 사항	경 관		• 경관체크리스트 준용	
	보행동선		• 개원길~중앙광장~북측상업시설 및 개포동길을 연계하는 남북보행동선 조성 • 주공 5단지 중앙광장~주공 7단지중앙광장으로 연계되는 동서 보행동선 조성	
	차량동선		•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자전거도로		• 영동대로변(폭3m이상)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 개원길, 개포동길변 및 통경구간내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조성(폭1.5m이상)	
	근린광장		• 단지내 근린광장 1개소 조성	
쌈지형공지		-		

- ※ 법정 상한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 및 관련법령과 기준을 우선 적용함
- ※ 공동개발추진이 무산되어 개별구역별로 개발을 진행할 때에는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반시설 및 지침 등을 각 개별구역에 맞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 ※ 보행동선 · 근린광장 · 쌈지형공지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변경할 수 있음
- ※ 소형주택(임대주택)은 정비계획 수립시 규모를 다양하게 계획(예시 : 주거전용면적 40㎡~59㎡)
- ※ 부분임대아파트 확보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입하여야 하며, 비율은 60~85㎡, 85㎡이상 세대수의 20%이상 확보하는 것을 권장
- ※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관련법에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함
- ※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에 따름
- ※ 특별계획구역 7,8구역내 공공기반시설(순부담) 등은 향후 세부개발계획(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시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함

※상기 변경내용을 제외한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타 특별계획구역의 계획내용은 변경없음

4. 경미한 사항에 관한계획 : 변경없음

Ⅲ.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개포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규	개포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	증) 56,173.2	56,173.2	-

3. 정비계획 수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6,173.2	-	56,173.2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6,173.2	-	56,173.2	100.0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56,173.2	-	56,173.2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15.2	증) 4,821.5	5,136.7	9.1	기부채납: 4,821.5㎡ (순부담)
	도 로	315.2	증) 813.5	1,128.7	2.0	
	공 원	-	증) 4,008.0	4,008.0	7.1	
택 지 (획 지)	소 계	55,858.0	감) 4,821.5	51,036.5	90.9	-

주)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403	24	국지 도로	636	광로1-72	대로1-20	일반 도로	-	-	삼성로4길
변경	중로	1	403	22~24	국지 도로	636	광로1-72	대로1-20	일반 도로	-	-	선형변경
기정	중로	2	242	15	국지 도로	678	광로1-72	중로1-230	일반 도로	-	건고시388호 (84.09.28)	개포로 88길
변경	중로	2	242	15	국지 도로	285	중로1-403	중로1-230	일반 도로	-		선형변경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1-403	중로 1-403	• 선형변경 및 일부구간 도로 축소(폭24m→폭22m)	• 5단지 구역정비 및 구역내 보도개설에 따른 선형변경 및 구역내 도로폭 축소
중로 2-242	중로 2-242	• 선형변경 및 연장축소 (678→285m)	• 불합리한 도로교차 구조개선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

2) 공원

가)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5	개포25	소공원	개포동187	-	증) 851.5	851.5	-	6·7단지 경계부
신설	26	개포26	가로공원	개포동187	-	증) 1,637.3	1,637.3	-	북측상업 지역경계부
신설	27	개포27	가로공원	개포동187	-	증) 1,519.2	1,519.2	-	북측상업 지역경계부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㉕	개포25	• 신설 : 851.5㎡	• 주요 통경축변 및 도로교차 결정부 보행 집결점에 소공원 설치
㉖	개포26	• 신설 : 1,637.3㎡	• 북측상업지역과 연계한 가로공원 조성으로 보행자 편의·휴식공간 제공
㉗	개포27	• 신설 : 1,519.2㎡	• 북측상업지역과 연계한 가로공원 조성으로 보행자 편의·휴식공간 제공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동 이용 시설	경로당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	증) 450	450	-
	주민공동시설		-	증) 2,400	2,400	-
	관리사무소		-	증) 150	150	-
	어린이놀이터		-	증) 1,500	1,500	-
	주민운동시설		-	증) 1,000	1,000	-
	어린이집		-	증) 720	720	-
	작은도서관		-	증) 230	230	-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 축	철거 이 주	
신규	개포주공 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56,173.2	택지	51,036.5	개포동 187번지	8	-	-	8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정비 계획	예정 법정 상한	
신규	개포주공 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56,173.2	택지	51,036.5	개포동 187번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50% 이하	299.90% 이하	105m이하/ 35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및 비율 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 총세대수의 60%이상							
			구 분	전용 면적 (㎡)	세대수(세대)		비율(%)			
					소형	분양				
			전용60㎡미만	45	190	－	14.22	24.40	64.30	
				59	－	136	10.18			
			전용60㎡이상 전용85㎡미만	84	－	533	39.90			
			전용85㎡초과	99		248	18.56			35.70
				114		222	16.62			
				120		7	0.52			
합 계		1,336		100.00						
심의완화사항			• 우수디자인(5%), 지속가능형 건축구조(7%), 친환경/신재생에너지(5%) 등 허용용적률 17% 완화 •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정비계획용적률(250%) → 예정법정상한용적률 (299.9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삼성로변 8m / 개원길변, 개포로88길변 : 6m － 개원길변 건축물의 저층부(3층이하)의 용도가 주민편의시설(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인 경우 : 건축지정선 3m				

※ 기타사항은 정비계획지침도 및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6의 계획지침 준용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시 조정 될 수 있음

3) 개발가능(상한)용적율 산정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토지이용 계획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계획용적률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산정내용

계

대지면적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대지(획지)내 용도폐지되는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56,173.2

51,036.5

5,136.7

-

315.2

• 순부담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5,136.7㎡ - 0㎡ - 315.2㎡ = 4,821.5㎡

• 계획(기준)용적률 = 210%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β = 210% + 17% = 227%
※ β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구분

판 단 기 준

비고

우 수 디자인

• 「공동주택 심의기준」의 디자인 다양화기준의 권장기준 충족 후 건축위원회에서

구분

세부항목

적용방법(단위:유형)
최소기준 권장기준

주동 형식 다양화

1.주거형태 다양화 (1가지유형10% 이상)

가.3백세대 미만이고 5동미만
나.3백세대 또는 5동 이상
다.1천세대 또는 10동 이상
라.1천5백세대 또는 15동 이상

2.높이 다양화 (1가지 유형 10%이상)

가.3백세대 미만이고 5개동 미만
나.3백세대 또는 5개동 이상
다.1천5백세대 또는 15동 이상

3.평면 및 단면형태 다양화 (1가지 유형 10%이상)

가.단위주거 평면크기 변화
나.단위주거 평면형태 변화
다.단위주거 단면형태 변화(복층화, 디자인된 혼합형 등)

4.입면디자인다양화

가.벽면을
나.디자인 다양화

5.발코니 형태 다양화

가.세대별 외벽길이 30%이상 지양
나.발코니 형태 다양화 (돌출형,개방형 등)

<<예외 규정>>
- 구청장등이 동 심의기준을 준용, 설계경기를 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 참석위원2/3이상 인정시
- 건축위원회 참석위원 4/5이상 인정시

5%

지속 가능형 건축 구조

라멘 구조 (10%)

무량판 구조 (7%)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세부평가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분야

세부평가기준

건축 구조

• 철골콘크리트, 철골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 기둥과 보가 일체화된 라멘 구조
- 기둥과 슬래브가 일체화된 무량판 구조
• 계단실, 엘리베이터 코어, 외기에 면한 축벽, 기타 평면계획상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력벽체 설치 허용

공용 설비

• 각 세대별로 공용설비공간은 구조체에서 분리 시공하고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한 점검구를 확보할 것

7%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우수급 등

• 건축비의 1%이상
※ 신·재생 에너지 설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자연채광 시스템 적용에 한함
• 친환경 건축물 인증
- 최우수 (85점 이상)

5%

총 17%적용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1.3α)
= 227% + (210 × 1.3 × 0.0945) = 252.79%

※ α =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 나머지 대지면적
= 4,821.5㎡ / 51,036.5㎡ = 0.0945

• 정비계획용적률 = 250.0%

구 분	산정내용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99.90%이하

※ 허용용적률 20%이하가 포함된 용적률임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항목은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최신기준을 준용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 건축물 경관 - 대모산과 양재천을 잇는 통경축 확보고려 - 인동간격 및 통경축을 확보하는 건축물 배치 - 주변 대모산과 공동주택을 고려하여 스카이라인 형성 - 건축물로 인하여 주변경관이 차폐되는 것을 막고 건축물과 주변지형 및 경관의 조화를 위하여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 • 가로경관 - 가로수와 가로등은 도로별 개성을 부여하는 식재 및 가로주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 - 보도폭, 공개공지확보 등을 통한 보행공간 확충 •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경관 - 친수환경조성과 도시내 자연요소를 활용 - 주변지형과 조화되는 건축배치 계획 및 녹지계획 • 일조권 검토 - 건축법 및 서울시 건축조례규정 준수 - 대지경계선을 유지하여 법정한도 이상의 일조량 확보 •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경관부문 및 “개포택지개발지구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경관관련사항을 준용함	-
환경보전	• 환경성 검토를 통해 정비구역내 정비사업에 의한 환경영향에 따라 영향저감방안 강구 • 생태면적률 30%이상, 자연지반율 10%이상 확보	-
재난방지	• 긴급재난구조차량 접근 및 소방차등의 접근로 배려 •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시스템 및 단지내 상하수도시설의 합리적인 설계 반영	-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 고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개포주공5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	• 기정: 940세대 • 변경: 1,336세대 • 증: 396세대	이상없음	-

아.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가 구	획 지			비 고
	위 치	구 분	면 적(㎡)	
1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6	51,036.5	-

※ 가구 및 획지번호는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준용함

자.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산 정 내 용						비 고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면적	정비계획용적률	• 250%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99.90%						
	용적률 증가분	• 49.90% (299.90-250%)						
	증가된 용적률의 50%	• 24.95% (49.90% × 0.5)						
	의무 연면적	• 12,733.61㎡이상 (24.95% × 51,036.5㎡)						
재건축 소형주택 확보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 (공급면적㎡)	비고 (연면적㎡)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원	51,036.5㎡	-	계	190	-	12,743.30
					45㎡	190	67.07	12,743.30

IV.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 수정가결(2017년 5월 17일)
 - 구역계(56,173㎡), 용적률(예정법적상한 299.90%), 순부담률(8.4%), 정비기반시설(도로 1,128.7㎡, 공원3,921.0㎡), 세대수(1,307세대, 소형임대158세대 포함), 보행동선계획 등은 금회 상정안으로 수정
 - 대상지 북측 보차혼용통로의 폭원은 10m로 수정
- 조건사항
 - 대상지 남측 주출입구 차량진입로의 회전 반경(동선)은 예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것
 - 소형임대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45제곱미터 이하로 조정할 것

V.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 첨부(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도면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VI.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2133-7141) 및 강남구청 주택과(☎ 3423-606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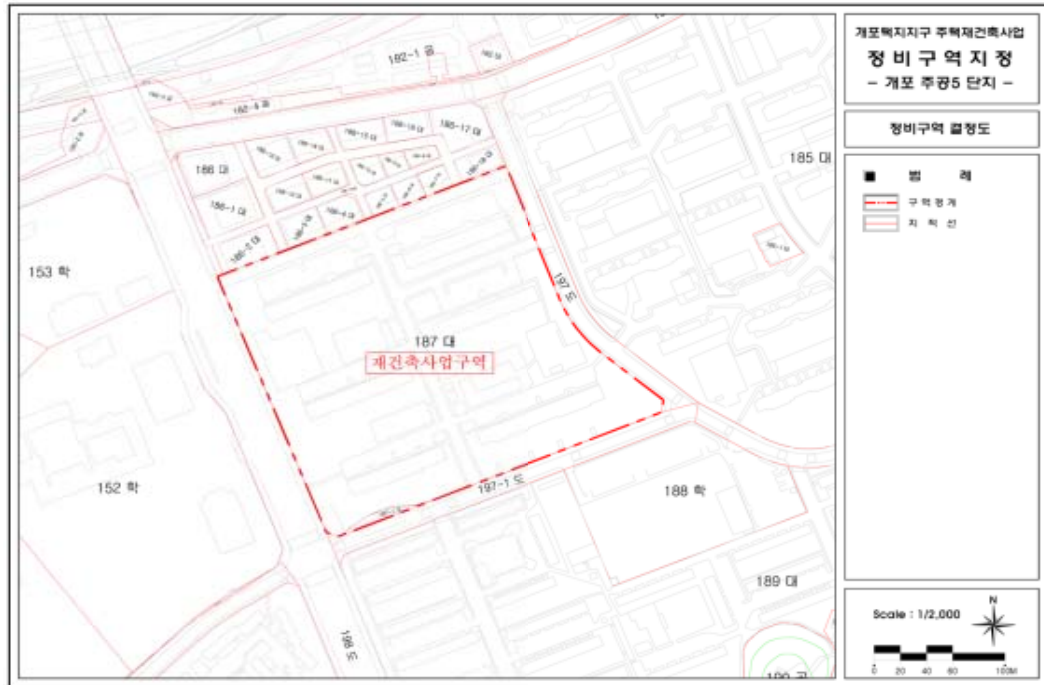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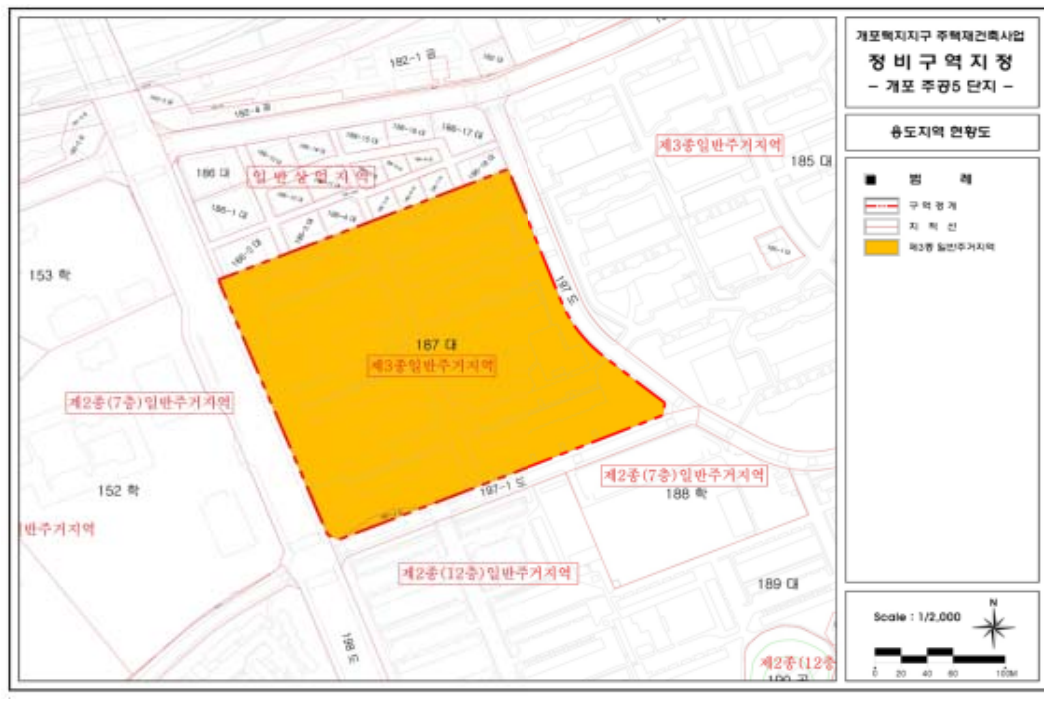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변경)



정비구역 결정도



용도지역 결정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20호

목제1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213호(2011.07.28), 양천구고시 제2013-89호(2013.08.08), 양천구고시 제2015-56(2015.10.15), 양천구고시 제2016-16(2016.03.10)로 정비구역(경미한)변경 결정 고시된 서울시 양천구 목동 632-1번지 일대 목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목제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규	목제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양천구 목동632-1번지 일대	24,519.5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4,519.5	—	24,519.5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4,519.5	—	24,519.5	100.0	

2)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적(㎡)			비 율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24,519.5	—	24,519.5	100.0	
정비기반시설	소 계	6,523	—	6,523	26.6	
	도 로	4,333	—	4,333	17.7	
	어린이공원	2,190	—	2,190	8.9	
	주차장	—	— (3,189.57)	— (3,189.57)	—	(어린이공원 지하 설치 연면적)
획지 1		17,996.5	—	17,996.5	73.4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①	12~15	국지	228	목동 646-10	목동 636-8				
기정	소로	1	①	10	국지	115	목동 646-10	목동 628-4				
기정	소로	3	②	6	국지	85	목동 551-4	목동 552-1				

나) 공원 (변경)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629-6번지 일원	2,190	—	2,190	—
신설	②	주차장	—			— (3,189.57)	— (3,189.57)	(어린이공원 지하 설치 연면적)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부대 복리 시설	관리사무소	획지	186.79	-	186.79	
	경비실	획지	33.32	-	33.32	
	경로당	획지	156.99	-	156.99	
	보육시설	획지	198.72	-	198.72	
	어린이놀이터	획지	584.82	-	584.82	
	작은도서관	획지	225.90	-	225.90	
	주민체육시설	획지	576.32	-	576.32	
	주민공동시설	획지	1742.75	-	1742.75	
	주민휴게시설	획지	1개소	-	1개소	
	근린생활시설	획지	173.56	-	173.56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목제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4,519.5	목동 632-1번지 일원	113	-	-	113	-	-

나) 건축시설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층수
	명칭	면적(㎡)				정비 계획	법적 상한	
기정	획지	17,996.5	목동 632-1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18.34% 이하	-	42m이하 평균13층이하 (최고14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세 대 수		
						기 정	비 율	
			계	410	100.0%			
			전용면적 60㎡이하	220	53.7%			
			전용면적 60~ 85㎡이하	174	42.4%			
			전용면적 85㎡초과	16	3.9%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주택의 전체면적에 대한 비율 : 94.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변경없음)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 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준치시설 (종교시설)	신설 정비 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준치
	24,519.5㎡	17,996.5㎡	-	6,523㎡	3,261.6㎡	1,196㎡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면적 - 대지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6,523\text{㎡} - 3,261.6\text{㎡} - 1,196\text{㎡} = 2,065.4\text{㎡}$ (충수완화면적대비 10.0%)						
계획(기준) 용적률	계획용적률 : 190%						
개발가능 용 적 률 산 정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β = 190% + 0 = 190%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times$ 1.3α) $= 190\% + (190\% \times 1.3 \times 0.114766) = 218.34\%$ $\ast \alpha = \text{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text{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alpha = 2,065.4\text{㎡} / 17,996.5\text{㎡} = 0.114766$ - 정비계획 용적률 = 218.34% ※ 건축계획 : 218.07%						

※ 상기 개발가능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양도 및 귀속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임.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 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재난방지	화재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수해	자연토양유지 및 공공보행통로, 어린이공원, 공공용지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통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6)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권리자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기정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목제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황 : 344세대 계획 : 410세대 증) 66세대	해당사항 없음	
변경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목제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양천구(공원,주차장)	현황 : 344세대 계획 : 410세대 증) 66세대	해당사항 없음	

7)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가 구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계	24,519.5		24,519.5	
	1	-	목동 632-1번지 일대	17,996.5	공동주택
	2		목동 629-6번지 일대	2,190.0	어린이공원
	3		목동 627-16번지 일대	4,333.0	도로
변경	계	24,519.5		24,519.5	
	1	-	목동 632-1번지 일대	17,996.5	공동주택
	2		목동 629-6번지 일대	2,190.0	어린이공원 /주차장
	3		목동 627-16번지 일대	4,333.0	도로

8)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정비 계획수립 및 정비 구역지정도서 참조

3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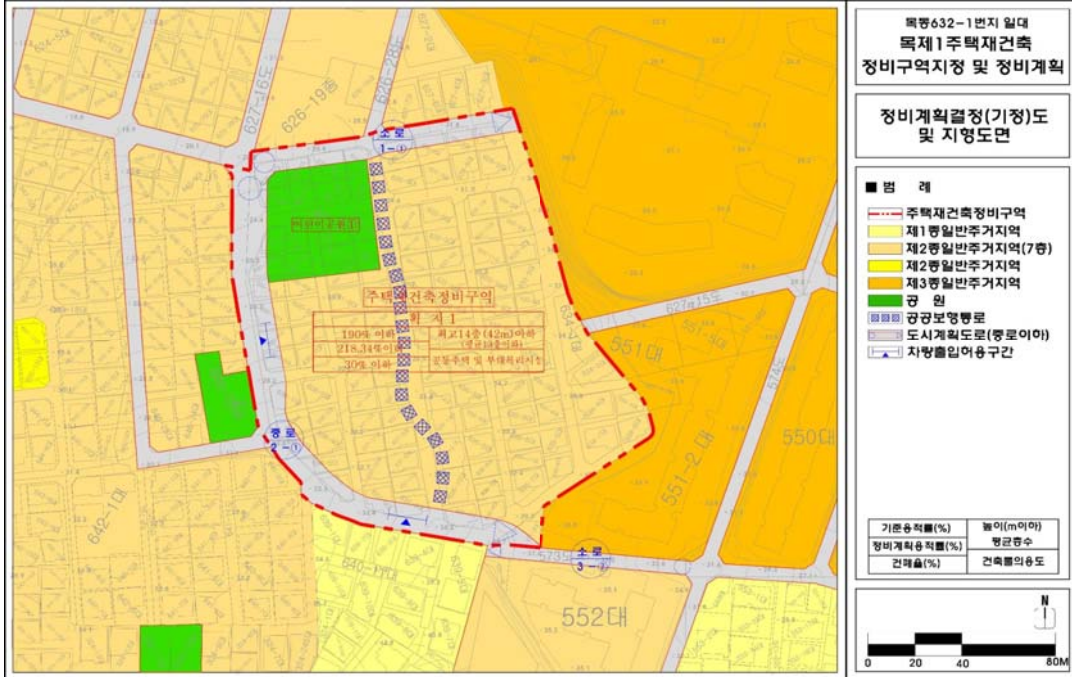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02-2133-7229) 및 양천구 주택과(☎02-2620-3526)에 관계서류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비계획 결정도 (변경있음)

· 기정



· 변경



2)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있음)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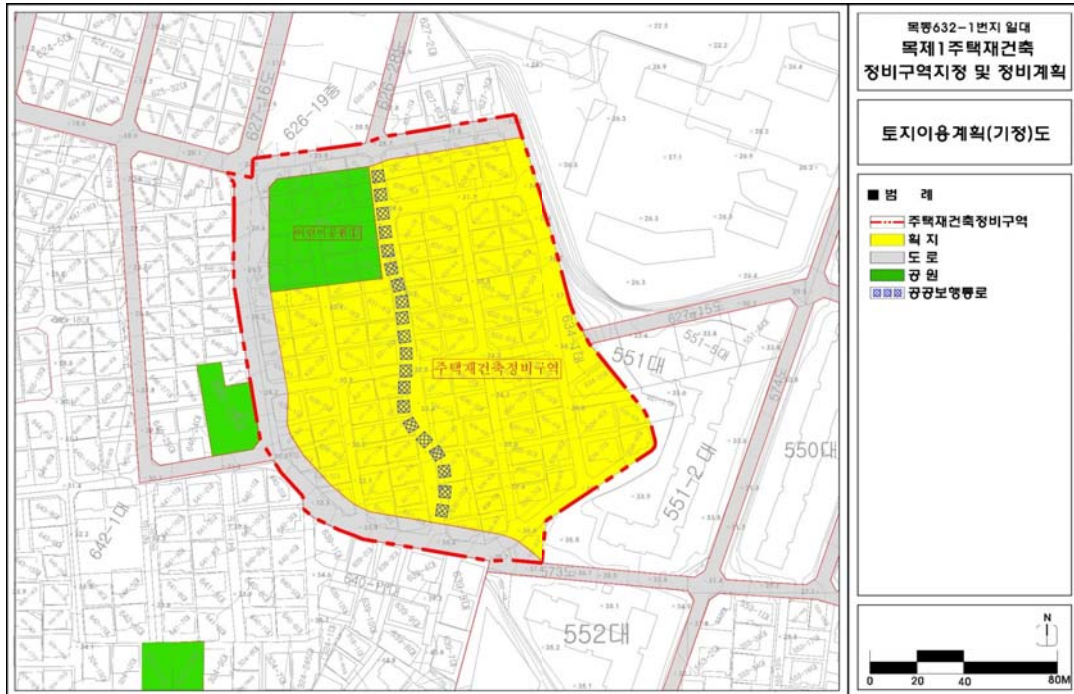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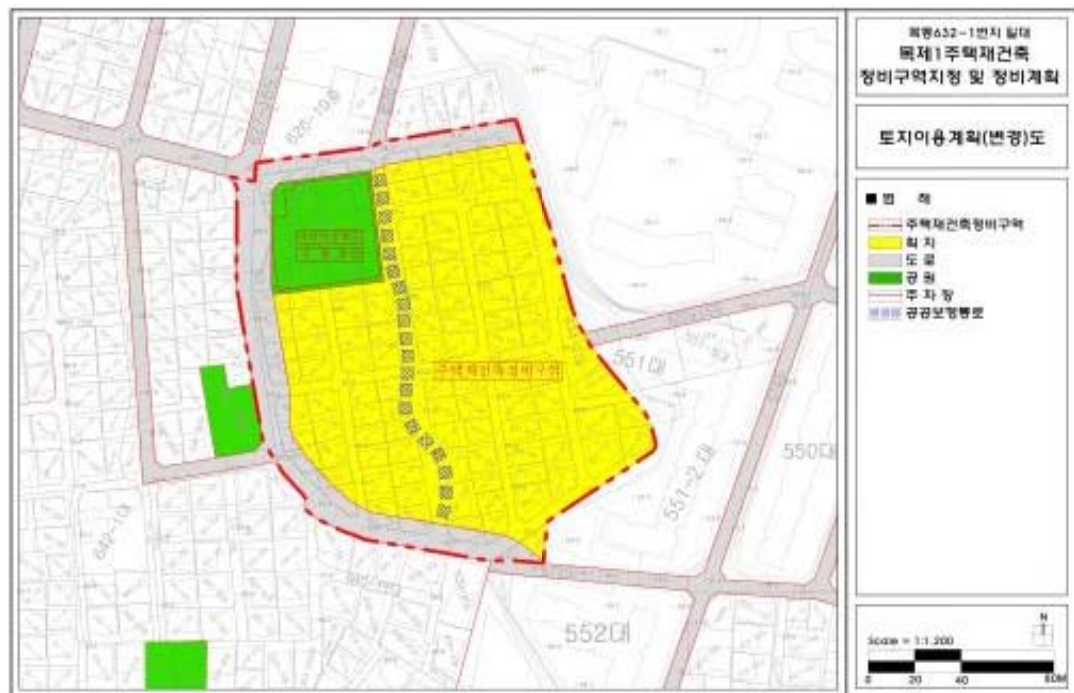


3) 토지이용계획도 (변경있음)

· 기정



·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22호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8호(2004.2.25.)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48호(2005.12.30.)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1·2지구 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27호(2017.06.2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며,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장

□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의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

- 명 칭 :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 유 형 : 주거지형(시범 뉴타운지구)
- 위 치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일원
- 면 적 : 3,492,650.9㎡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 재정비촉진사업 : 도시개발사업 (수용 또는 수용방식)
- 시행기간 : 2004.02.25~2017.12.31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 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개요

-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계획 (변경) : 불임 1

5. 지구별 주택 공급계획(변경 없음) : 불임 2

6. 주택용지 블록별 계획(변경 없음) : 불임 3

7. 토지 등의 세목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 (변경)

번호	동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1	진관동	-	240-22	대	2	2	김숙자	진관외동 482	조서누락

8.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사항

-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중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과 같음

9.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 관련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전화 : 02-2133-7217) 및

은평구청 도시계획과(전화:351-7406), 서울주택도시공사 토목기술부(전화:02-3410-758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개발제한구역 내 낙후지역 시가지를 개발·정비하여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임대 및 분양주택의 건립을 통해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서울시 서북권역의 관문도시로서 새로운 지구중심 창출
 - 지역특성을 고려한 녹지보전방안의 제시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건전한 도시개발이 되도록 유도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일원
 - 면 적 : 3,492,650.9㎡
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변창흠)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길 621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없음)
 - 1지구 : 2004.02.25. ~ 2017.12.31.
 - 2지구 : 2005.12.30. ~ 2017.12.31.
 - 3지구 : 2006.12.28. ~ 2017.12.31.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변경 없음)
 - 수용 및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
 - 실시계획인가도서의 내용과 같음 : 붙임 4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전화 : 02-2133-7217), 은평구 도시계획과(전화 : 02-351-7406)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토목기술부(전화 : 02-3410-7583)
9.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해당 없음
10.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도서 : 붙임 4
11.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건
 - 기 실시계획 변경인가 시 조건부여 사항 이행할 것.
 - 금회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 관련 제반 영향평가 협의의견 및 관계기관 등의 협의내용은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할 것.

< 붙임 1 >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계		3,492,650.9	-	3,492,650.9	100.0	
주거 용지	소 계	1,383,770.0	-	1,383,770.0	39.6	
	주 택 용 지	1,348,527.5	-	1,348,527.5	38.6	
	단독주택용지	66,249.2	-	66,249.2	1.9	
	공동주택용지 (아파트)	1,282,278.3	-	1,282,278.3	36.7	
	준주거시설용지	28,201.4	-	28,201.4	0.8	
	근린생활시설용지	7,041.1	-	7,041.1	0.2	
상업 용지	소 계	87,643.0	-	87,643.0	2.5	
	일반상업	87,643.0	-	87,643.0	2.5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1,900,385.7	-	1,900,385.7	54.4	
	도로	488,442.6	-	488,442.6	14.1	• 중복 결정된 도로 12,225.4㎡는 하천면적 에 편입
	주차장	20,960.7	-	20,960.7	0.6	6개소
	자동차정류장	16,529.6	-	16,529.6	0.5	1개소
	철도시설	8,535.8	-	8,535.8	0.2	• 중복 결정된 철도(본선:15,394.4㎡)는 토지 이용계획상 하천 1,236.6㎡*, 도로 11,744.1㎡, 근린공원 2,313.3㎡, 완충녹지 100.4㎡에 편입 • 중복 결정된 철도(구파발역:3,975.5㎡)는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3,838.2㎡, 공원 137.3㎡에 편입 • 철도(구파발역)와 입체적결정된 1,035.6㎡ 은 토지이용계획상 상업용지에 편입
	완충녹지	36,317.0	-	36,317.0	1.0	
	연결녹지	25,949.5	-	25,949.5	0.7	• 중복 결정된 연결녹지 59.0㎡는 하천면적에 편입
	경관녹지	135.8	-	135.8	0.0	
	도시자연공원	9,132.1	-	9,132.1	0.3	
	근린공원	785,182.6	-	785,182.6	22.5	
	문화공원	65,279.7	-	65,279.7	1.9	
	소공원	1,392.0	-	1,392.0	0.0	
	공공공지	672.1	-	672.1	0.0	

* 철도와 중복 결정된 하천 1,236.2㎡중 947.9㎡는 도로와 중복 결정됨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자원회수시설	8,512.5	—	8,512.5	0.2	1개소
	수도시설	—	—	—	0.0	· 중복 결정된 수도시설 7,856.5㎡는 근린공원 면적에 편입
	공동구	520.4	—	520.4	0.0	관리사무소, 환기구 (매설연장 : 990m)
	공공청사	64,458.6	—	64,458.6	1.8	6개소
	학교	142,167.3	—	142,167.3	4.1	초5, 중2, 고4
	박물관	—	—	—	0.0	· 중복 결정된 박물관 6,530.1㎡는 문화공원 면적에 편입
	체육시설	6,547.3	—	6,547.3	0.2	1개소
	도서관	1,324.6	—	1,324.6	0.0	
	사회복지시설	15,840.6	—	15,840.6	0.5	3개소
	하천	156,035.8	—	156,035.8	4.5	
	유수지	13,300.6	—	13,300.6	0.4	3개소 · 중복 결정된 유수지(2개소) : 9,208.7㎡는 근린공원 면적에 편입
	종합의료시설	21,612.6	—	21,612.6	0.6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1,535.9	—	11,535.9	0.3	1개소
	소 계	120,852.2	—	120,852.2	3.5	
기타 시설 용지	주차장용지	1,969.7	—	1,969.7	0.1	부설주차장 3개소
	종교시설	32,341.4	—	32,341.4	0.9	26개소
	유통시설	8,039.3	—	8,039.3	0.2	1개소
	주유소	6,320.1	—	6,320.1	0.2	6개소
	유치원	3,889.3	—	3,889.3	0.1	6개소
	공익시설	13,517.3	—	13,517.3	0.4	4개소
	군사시설	3,913.3	—	3,913.3	0.1	5개소
	편익시설	41,984.4	—	41,984.4	1.3	9개소
	자동차관련	8,478.9	—	8,478.9	0.2	3개소
	커뮤니티시설용지	398.5	—	398.5	0.0	2개소

< 붙임 2 > 지구별 주택 공급계획(변경 없음)

주택유형	세대수 (호)											
	계				임 대				분 양			
	소계	1지구	2지구	3지구	소계	1지구	2지구	3지구	전체	1지구	2지구	3지구
계	17,773	4,734	5,484	7,555	7,264	1,699	1,973	3,592	10,509	3,035	3,511	3,963
단독주택	256	-	-	256	-	-	-	-	256	-	-	256
아파트	17,517	4,734	5,484	7,299	7,264	1,699	1,973	3,592	10,253	3,035	3,511	3,707
전용면적 60㎡이하	5,312	1,560	1,723	2,029	4,368	1,448	1,169	1,751	944	112	554	278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	7,174	1,607	2,176	3,391	2,896	251	804	1,841	4,278	1,356	1,372	1,550
전용면적 85㎡ 초과	5,031	1,567	1,585	1,879	-	-	-	-	5,031	1,567	1,585	1,879

< 붙임 3 > 주택용지 블록별 계획(변경 없음)

구 분		면적	세대수	평형(평)	유형	용적률	용도지역	층수
계		1,348,527.5	17,773					
1지구	소계	371,568.2	4,734					
	BL 1-1	39,803.6	707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2	27,320.9	335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3	19,201.6	255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4	19,463.0	241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5	27,243.7	318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6	21,400.8	379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7	29,546.9	378	60㎡이하,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200% 이하	제2종전용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8	17,088.7	208	60㎡이하,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200% 이하	제2종전용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9	10,714.5	127	85㎡이하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10	19,620.7	230	60㎡이하,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200% 이하	제2종전용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11	13,322.0	187	60㎡이하,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200% 이하	제2종전용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12	35,907.7	551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13	33,498.3	298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1-14	35,795.9	300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1-15	21,639.9	220	-	연립주택	110% 이하	제1종일반	4층이하
2지구	소계	382,652.7	5,484					
	BL 2-1	57,606.9	947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2-2	30,550.8	434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평균15층이하
	BL 2-3	52,431.7	659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평균15층이하
	BL 2-4	8,694.3	143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2-5	25,393.2	387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평균15층이하
	BL 2-6	29,003.1	353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2-7	50,520.5	472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2-8	37,091.5	448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2-11	30,152.8	469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평균15층이하
	BL 2-12	34,604.2	660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평균15층이하
	BL 2-13	15,577.5	162	85㎡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2-14	11,026.2	350	60㎡이하	아파트 (임대주택)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구분	면적	세대수	평형(평)	유형	용적률	용도지역	층수	
3지구	소계	594,306.6	7,555					
	BL 2-9	33,088.1	412	60㎡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2-10	17,599.0	297	60㎡ 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평균 15층이하
	BL 3-1	31,050.1	334	60㎡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3-2	45,240.0	486	60㎡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3-3	56,867.1	1,022	85㎡ 이하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3-4	23,523.1	423	85㎡ 이하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3-5	41,188.8	712	85㎡ 이하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3-6	18,585.4	189	60㎡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3-7	17,984.0	175	60㎡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3-8	32,745.7	330	60㎡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3-9	61,878.0	571	85㎡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평균 15층이하
	BL 3-10	14,232.0	126	85㎡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평균 15층이하
	BL 3-11	13,761.0	125	85㎡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평균 15층이하
	BL 3-12	31,257.4	426	85㎡ 이하	아파트	평균 150% 이하	제1종일반 제2종일반	4층이하 15층이하
	BL 3-13	64,126.8	1,117	60㎡ 이하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120% 이하	제2종전용	평균7층이하 (최고 12층이하)
	BL 3-14	24,930.9	554	85㎡ 이하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단독 1-1	2,768.1	12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2	3,615.1	17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3	3,662.8	17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4	2,889.7	13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5	1,130.2	3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6	1,546.6	8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7	1,452.0	7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8	3,695.9	15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9	2,848.4	9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1-10	459.9	2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1-11	2,640.0	8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1-12	3,860.1	12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1-13	560.5	2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1-14	5,279.0	16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1-15	2,109.2	7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1-16	1,025.6	3	—	단독주택	200% 이하	제2종일반	4층 이하
	단독 2-1	1,481.2	5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2-2	3,299.7	10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2-3	4,192.1	13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2-4	5,612.1	18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3-1	954.0	5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3-2	2,444.9	13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3-3	2,336.0	14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3-4	2,393.1	14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3-5	1,407.8	5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3-6	2,585.2	8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 붙임 4 >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1.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 붙임 1

2. 주택공급계획(변경 없음)

1) 지구별 인구수용 및 주택공급계획

구 분	계	1지구	2지구	3지구	비 고
수용인구 (인)	49,651	13,255	15,355	21,041	
주택공급 (호)	17,773	4,734	5,484	7,555	

2) 지구별 주택공급계획 : 붙임 2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재정비촉진지구 및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 재정비촉진지구 및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은평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은평구 진관동 일원	3,492,650.9	-	3,492,650.9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은평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은평구 진관동 일원	3,492,650.9	-	3,492,650.9	

3)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소 계	3,492,650.9	-	3,492,650.9	100.0	
주 거 지 역	2,279,565.7	-	2,279,565.7	65.2	
전용주거지역	864,357.0	-	864,357.0	24.7	
제1종 전용주거지역	123,549.2	-	123,549.2	3.5	
제2종 전용주거지역	740,807.8	-	740,807.8	21.2	용적률 150% 이하
일반주거지역	1,346,563.5	-	1,346,563.5	38.5	
제1종 일반주거지역	45,838.6	-	45,838.6	1.3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00,724.9	-	1,300,724.9	37.2	
준주거지역	68,645.2	-	68,645.2	2.0	
일 반 상 업 지 역	136,919.0	-	136,919.0	3.9	
자 연 녹 지 지 역	1,076,166.2	-	1,076,166.2	30.9	

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11항에 의거하여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50% 이하로 함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기정)

구 분		류 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합 계			-	132	28,722.6	500,668.0	※ 일부노선은 하천과 중복 결정 (12,225.4㎡)
일 반 도 로	소 계		-	1	2,481.2	104,564.4	
	광로	3 류	40	1	2,481.2	104,564.4	
	소 계		-	4	3,476.2	97,042.2	
	대로	1 류	37	1	151.6	5,520.8	
		3 류	20~35	3	3,324.6	91,521.4	
	소 계		-	34	15,045.0	245,810.0	
	중로	1 류	20~26	8	6,806.0	142,144.9	
		2 류	15~22.5	12	3,047.2	36,633.0	
		3 류	12~20	14	5,191.8	67,032.1	
	소 계		-	93	7,720.2	53,251.4	
	소로	1 류	8~16.7	10	765.9	7,926.5	
		2 류	8~9	18	2,169.4	18,669.7	
		3 류	2~8	65	4,784.9	26,655.2	

■ 도로 총괄표(변경)

구 분		류 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합 계			-	132	28,723.8	500,668.0	※ 일부노선은 하천과 중복 결정 (12,225.4㎡)
일 반 도 로	소 계		-	5	5,958.6	201,606.6	
	대로	1 류	37	2	2,634.0	110,085.2	
		3 류	20~35	3	3,324.6	91,521.4	
	소 계		-	34	15,045.0	245,810.0	
	중로	1 류	20~26	8	6,806.0	142,144.9	
		2 류	15~22.5	12	3,047.2	36,633.0	
		3 류	12~20	14	5,191.8	67,032.1	
	소 계		-	93	7,720.2	53,251.4	
	소로	1 류	8~16.7	10	765.9	7,926.5	
		2 류	8~9	18	2,169.4	18,669.7	
		3 류	2~8	65	4,784.9	26,655.2	

■ 도로 결정조서(정정)

구분	구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2	35	주간선 도로	12,276.0	-	-	일반 도로			서고시 제2004-367호 고시내용
변경	광로	3	1	40	주간선 도로	2,841.2	구역계 진관외동 477-20	구역계 진관내동 567-43	일반 도로			
기정	대로	1	12	35	주간선 도로	8,000.0 (2,480.4)	-	-	일반 도로		내고시499 58.11.03	기정:서고시 제1995-21호 (1995.1.20) 금회정정
변경	대로	1	12	35~70 (40~50)	주간선 도로	8,002.0 (2,482.4)	홍은동 유진상가	시계 진관내동	일반 도로		"	

주) ()는 사업대상지 내 폭원 및 연장임, 이하 변경 없음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정정전) 광로3-1호선 대로1-12호선	(정정후) 대로1-12호선	• 고시내용 오기정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367호(은평뉴타운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승인)의 도로결정조서 중 통일로(대로1-12호선)의 오기사항을 정정하며 - 금회 정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63호, 제2005-448호, 제2006-370호, 제2006-458호, 제2007-377호, 제2007-495호, 제2008-268호, 제2008-427호, 제2010-19호, 제2010-134호, 제2010-263호, 제2010-398호, 제2011-125호, 제2011-211호, 제2011-306호, 제2011-355호, 제2011-407호, 제2012-26호, 제2012-146호, 제2012-219호, 제2012-247호, 제2013-92호, 제2013-175호, 제2013-243호, 제2013-272호, 제2013-287호, 제2013-398호, 제2013-428호, 제2013-468호, 제2014-214호, 제2014-336호, 제2015-24호, 제2015-087호, 제2015-155호, 제2016-104호, 제2016-282호, 제2016-331호, 제2017-227호 등의 개발계획변경,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등의 고시내용 중 광로3-1호선에 대한 결정(변경) 내용을 금회 정정내용으로 변경함

나) 주차장(변경 없음)

다) 철도(변경 없음)

라) 자동차정류장 결정조서(변경 없음)

- (2) 공간시설(변경 없음)
 - 가) 녹지(변경 없음)
 - 나) 공원(변경 없음)
 - 다) 공공공지(변경 없음)
-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없음)
 - 가) 자원회수시설(변경 없음)
 - 나) 수도(배수지)(변경 없음)
 - 다) 공동구 결정조서(변경 없음)
-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없음)
 - 가) 공공청사(변경 없음)
 - 나) 학교(변경 없음)
 - 다) 박물관(변경 없음)
 - 라) 체육시설(변경 없음)
 - 마) 도서관(변경 없음)
 - 바) 사회복지시설(변경 없음)
- (5) 방재시설(변경 없음)
 - 가) 하천(변경 없음)
 - 나) 유수지(변경 없음)
- (6) 보건위생시설(변경 없음)
 - 가) 종합의료시설(변경 없음)
- (7) 환경기초시설(변경 없음)
 - 가) 폐기물처리시설(변경 없음)

5) 기타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변경 없음)

- (1) 종교시설(변경 없음)
- (2) 유통시설(화훼)(변경 없음)
- (3) 주유소시설(변경 없음)
- (4) 유치원시설(변경 없음)
- (5) 공익시설(변경 없음)
- (6) 군사시설(변경 없음)
- (7) 편익시설(변경 없음)
- (8) 자동차관련시설(변경 없음)
- (9) 주차장(부설주차장)(변경 없음)
- (10) 커뮤니티시설(변경 없음)

4.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내용 및 조서 : 붙임 5

5.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 변경 없음

< 붙임 5 > 지구단위계획 내용 및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은평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은평구 진관동 일원	3,492,650.9	-	3,492,650.9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 붙임 4의 3.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같음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붙임 4의 3.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같음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공동주택용지(변경 없음)
- 단독주택용지(변경 없음)
- 준주거시설용지(변경 없음)
- 상업용지(변경 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없음)
- 주차장용지(변경 없음)
- 자동차정류장용지(변경 없음)
- 자원회수시설용지(변경 없음)
- 수도시설용지(변경 없음)
- 공동구용지(변경 없음)
- 공공청사용지(변경 없음)
- 학교용지(변경 없음)
- 박물관용지(변경 없음)
- 체육시설용지(변경 없음)
- 도서관시설용지(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 없음)
- 유수지용지(변경 없음)
- 종합의료시설용지(변경 없음)

- 폐기물처리시설용지(변경 없음)
- 종교시설용지(변경 없음)
- 유통시설(화훼)용지(변경 없음)
- 주유소용지(변경 없음)
- 유치원용지(변경 없음)
- 공익시설용지(정정)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고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익	①	-	진관동 산100-23 일원	6,947.5	감) 6,947.5	-	서고시 제2017-227호 고시내용
변경	공익	①	소계		-	증) 6,947.5	6,947.5	
			-1	진관동 산100-23 일원	-	증) 2,645.1	2,645.1	
			-2	진관동 산100-23 일원	-	증) 3,423.5	3,423.5	
			-3	진관동 산100-23 일원	-	증) 878.9	878.9	
기정	공익	①	-	진관동 산100-23 일원	6,947.5	감) 6,947.5	-	금회정정
변경	공익	①	소계		-	증) 6,947.5	6,947.5	
			-1	진관동 산100-23 일원	-	증) 2,645.1	2,645.1	
			-2	진관동 산100-23 일원	-	증) 3,352.4	3,352.4	
			-3	진관동 산100-23 일원	-	증) 950.0	950.0	

※ 이하 변경 없음

■ 변경사유서(정정)

가구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공익 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27호(2017.06.29)로 고시 중 획지분할에 관한 내용이 오기 고시되어 이를 정정함

- 군사시설용지(변경 없음)
- 편익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고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편익	㉠	-2	진관동 161-10 일원	700.0	증) 175.0	875.0	
변경	편익	㉠	-3	진관동 161-10 일원	2,570.0	감) 175.0	2,395.0	

※ 편익 ⑨-2, ⑨-3을 제외한 편익시설용지는 변경 없음

■ 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편익 ⑨-2	• 서울특별시고시로 고시된 편익 ⑨-2, ⑨-3 부지에 대하여 ⑨-2 부지의 문제점(주차공간, 서비스공간 등의 부족 및 사용자 편리성 저하 등) 해소를 위해 부지 면적 변경 • 은평구 문화관광과 요청사항(문화관광과-2960, 2017.07.26) (편익 ⑨-2 : 700.0㎡ → 875.0㎡, 편익 ⑨-3 : 2,570.0㎡ → 2,395.0㎡)
편익 ⑨-3	

- 자동차관련시설용지(변경 없음)
- 주차장시설용지(부설주차장)(변경 없음)
- 커뮤니티시설용지(변경 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 공동주택용지(변경 없음)
- 단독주택용지(변경 없음)
- 단독주택용지(한옥지정구역)(변경 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없음)
- 준주거시설용지(변경 없음)
- 상업용지(변경 없음)
- 주차장용지(변경 없음)
- 자동차정류장용지(변경 없음)
- 공동구시설용지(변경 없음)
- 자원회수시설용지(변경 없음)
- 공공청사용지(변경 없음)
- 학교시설용지(변경 없음)
- 도서관용지(변경 없음)
- 체육시설용지(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 없음)
- 폐기물처리시설용지(변경 없음)
- 종교용지(변경 없음)
- 유통시설(화훼)용지(변경 없음)
- 주유소용지(변경 없음)
- 공익시설용지(변경 없음)
- 편익시설용지(변경 없음)
- 종합의료시설용지(변경 없음)
- 자동차관련시설용지(변경 없음)
- 군사시설용지(변경 없음)
- 주차장용지(부설주차장)(변경 없음)

- 커뮤니티시설용지(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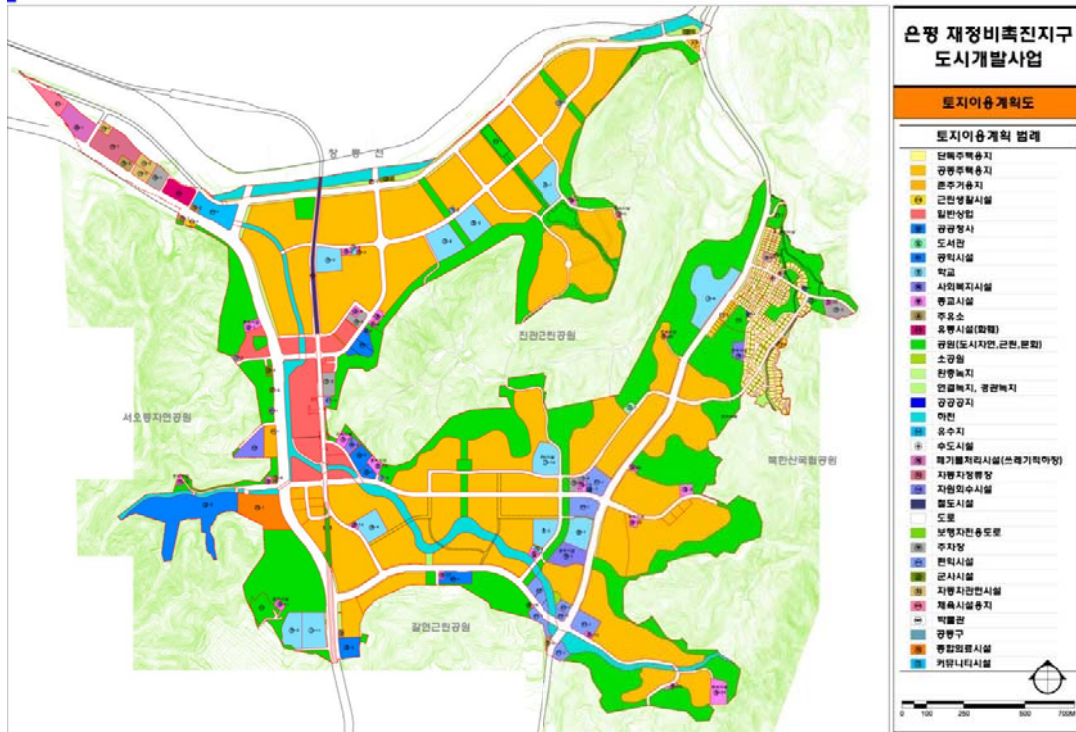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 일반사항(변경 없음)
- 공동주택용지(변경 없음)
- 단독주택용지(변경 없음)
- 단독주택용지(한옥지정구역)(변경 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없음)
- 준주거용지(변경 없음)
- 상업용지(변경 없음)
- 주차장용지(변경 없음)
- 자동차정류장용지(변경 없음)
- 자원회수시설용지(변경 없음)
- 공공청사용지(변경 없음)
- 학교시설용지(변경 없음)
- 체육시설용지(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 없음)
- 폐기물처리시설용지(변경 없음)
- 종교용지(변경 없음)
- 유통시설(화훼)용지(변경 없음)
- 주유소용지(변경 없음)
- 공익시설용지(변경 없음)
- 군사시설용지(변경 없음)
- 편익시설용지(변경 없음)
- 종합의료시설용지(변경 없음)
- 자동차관련시설용지(변경 없음)
- 주차장시설용지(부설주차장)(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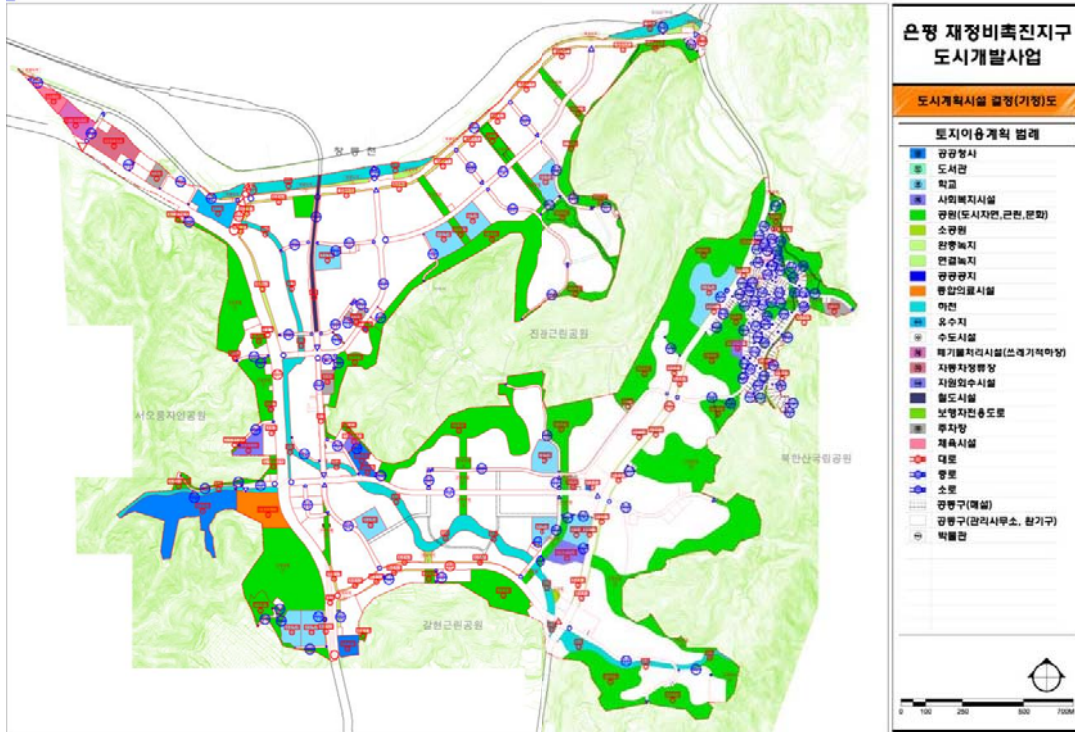
라.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마.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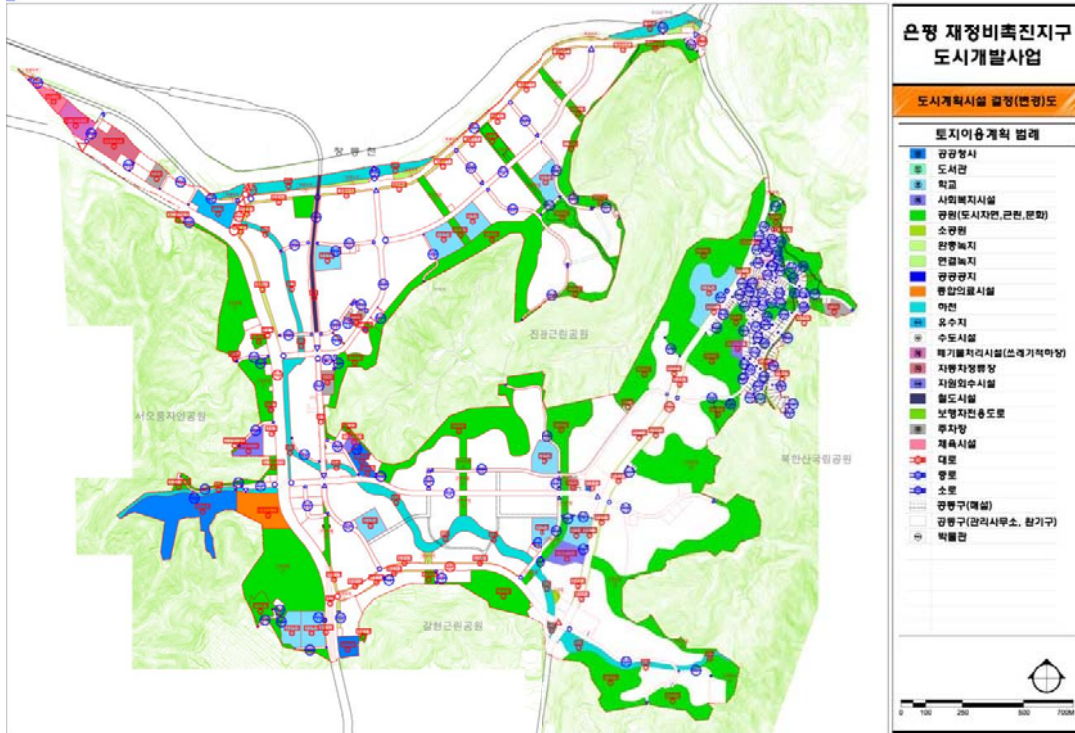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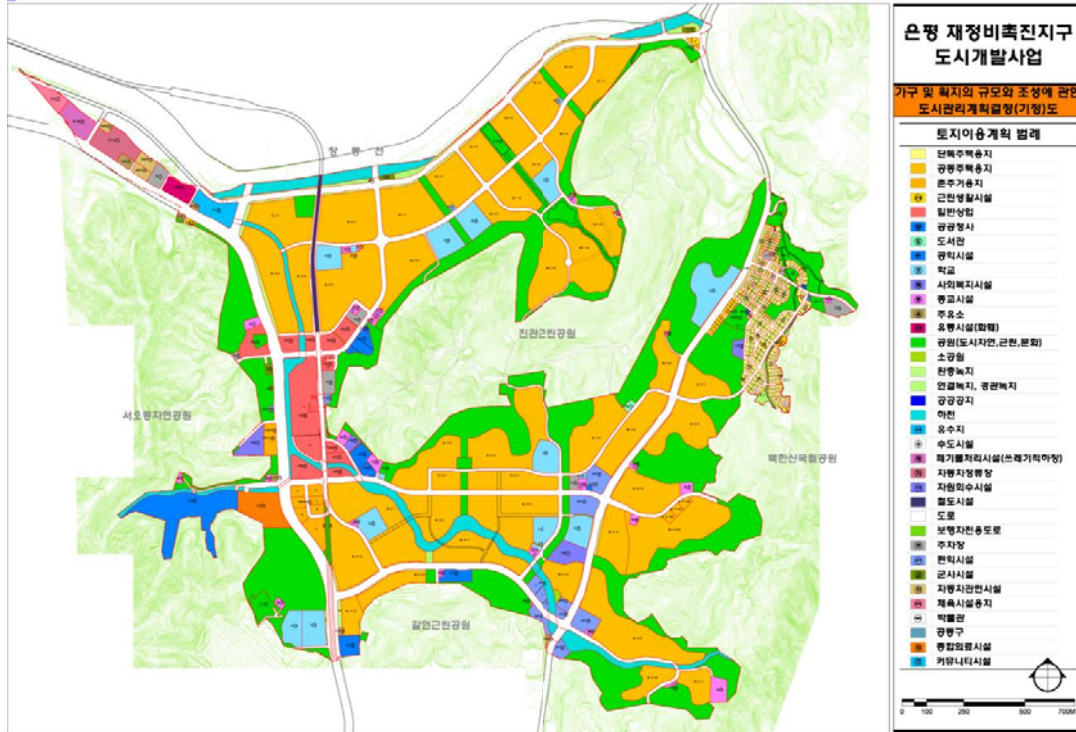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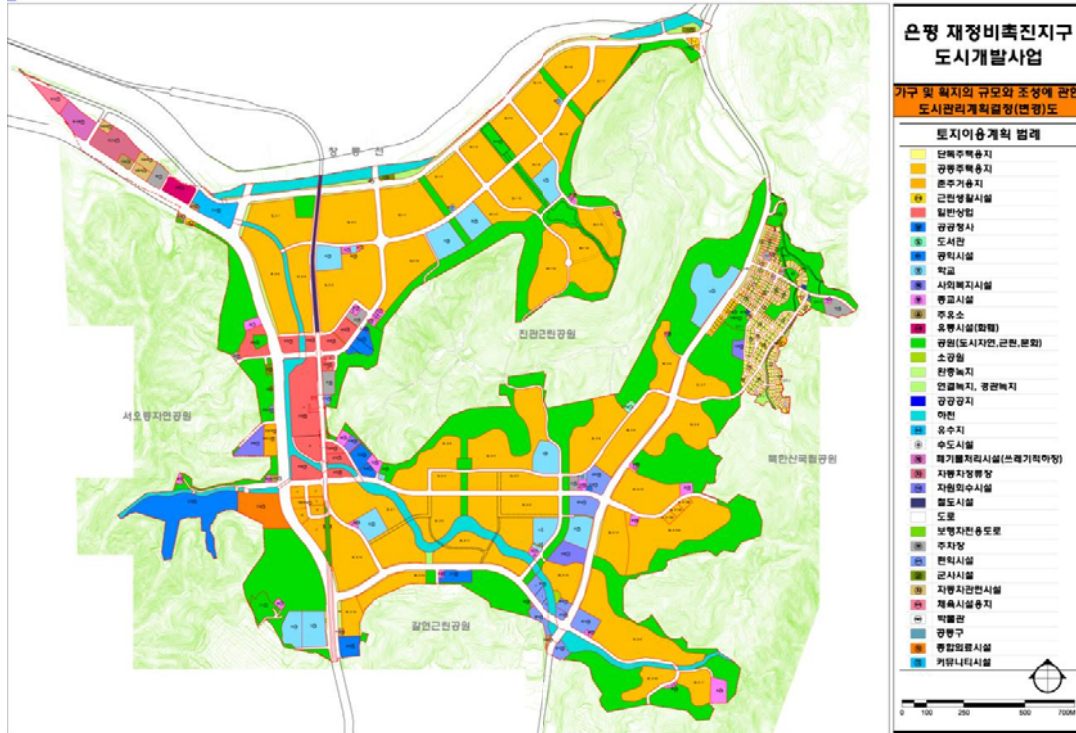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기정)도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939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장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7-84	디지털성범죄아웃 (대표 : 박수연)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19길 8-10	- 디지털 성범죄 관련 모니터링 실시, 교육자료 제작배포, 피해자의 고소 지원	50 (현금및 물품)	전국	'17.8.23 ~ '18.6.9
						'17.8.23 ~ '19.8.22
2017-85	공익단체 국민경제사회협의회 (대표 : 장명숙)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63	- 통바람 국민축제 및 사회정의시민운동으로 건강한 시민사회 안착과 발전에 기여	1,000 (현금)	전국	'17.8.23 ~ '18.7.30
						'17.8.23 ~ '18.7.3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964호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장

☐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변 경)
2017-86	(사)유아이에이2017서울 세계건축대회조직위원회 (대표 : 강성익)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7	-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및 UIA 총회의 목적달성과 국내 외 건축문화의 지속적 발전과 진 흥에 기여	1,000 (현금및물품)	전국	'17.9.1 ~ '17.12.31
						'17.9.1 ~ '17.12.31
						'17.9.1 ~ '17.12.31
2017-87	(사)글로벌케어 (대표 : 박용준)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 자연재해 등으로 위 기상황에 처한 해외 주민대상 의료지원과 식량 및 긴급구호 키 트 배분	150 (현금및물품)	전국	'17.9.5 ~ '18.9.4
						'17.9.5 ~ '19.9.4
						'17.9.5 ~ '19.9.4
2017-88	(사)대한민국총효범국민 운동본부 (대표 : 신석경)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39	- 국가에 충성하고 부 모 님을 공경하고 효 도하는 총 효사상의 범국민운동 개	230 (현금및물품)	전국	'17.9.1 ~ '18.8.31
						'17.9.1 ~ '18.8.31
						'17.9.1 ~ '18.8.31
2017-89	(사)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대표 : 김정현)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95	- 평화박물관 건립위한 학술 연구 및 사업설 명회, 사료편 찬, 교 육문화행사	100 (현금)	전국	'17.9.1 ~ '18.8.31
						'17.9.1 ~ '19.8.31
						'17.9.1 ~ '19.8.31
2017-90	(사)두루 (대표 : 김지형)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60	- 사회정의 및 공익을 위한 공익소송,법률 자문, 상담 등 공익 법률지원	100 (현금)	전국	'17.9.1 ~ '18.8.31
						'17.9.1 ~ '19.8.31
						'17.9.1 ~ '19.8.31
2017-2- 1	(사)휴먼인러브 (대표 : 김영후)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1	- 국내외 재난 및 빈곤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빈곤 경감	200 (현금)	전국	'17.1.11 ~ '17.12.31
						'17.1.11 ~ '17.12.31
						('17.1.11 ~ '18.12.3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966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이상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번길 *(도계동)	일시: 2017.06.17. 06:48 장소: 용산구 한남동 한남제1고가 남산1호터널앞 (한남제2고가 20톤) 내용: 총중량 24.1톤(4.1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7.25. 납기일: 2017.09.30.
홍순모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325번길 **-* , *동 ***호 (금곡동, 대림하이츠)	일시: 2017.07.01. 10:18 장소: 중구 주자동 삼일대로 남산1호터널 요금정산대 입구(한남제2고가 20톤) 내용: 총중량 24.85톤(4.85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7.25. 납기일: 2017.09.30.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한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67번길 *-* *동***호 (남촌동, **빌라)	일시: 2017.04.07. 09:53 장소: 마포구 성산동 성산고정초소 성산교(32톤) 내용: 총중량 36.15톤(4.15톤 초과),3회적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5.29. 납기일: 2017.07.31.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강기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103번길 **-* ***호 (토당동, **연립)	일시: 2017.04.17. 16:42 장소: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이마트앞 증산교(32톤) 내용: 총중량 36.85톤(4.85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5.29. 납기일: 2017.07.31.
이목원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6길 ** *층 ***호 (흑석동)	일시: 2017.04.28. 15:19 장소: 마포구 성산동 성산고정초소 성산교(32톤) 내용: 총중량 36.55톤(4.55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5.29. 납기일: 2017.07.31.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2017. 09. 30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300-8347, 팩스번호: 02-300-833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969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208호, 2016. 7. 2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에너지 자립 및 대기질 개선 등 최근 사회적 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도심지 내 건축물 등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분야 대응을 강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공사 시 노후건설기계 사용으로 인한 질소산화물(NOx) 발생량 증가를 줄이기 위하여 공사장 내 70% 이상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설치 의무화
 -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설치 의무화
-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및 기준 마련
 -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도입을 위해 주차단위구획의 5% 이상 전기인입선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차단위구획을 100으로 나눈 수 이상 충전시설 설치 규정 신설
- 친환경에너지 등 에너지 시설 설치 비율 상향
 - 민간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사용량의 16% 이상 설치하되, 신재생에너지 12% 초과비율은 집단에너지시설, 상수열, 에너지저장시설(ESS) 등 다양한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시설 설치 유도
-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비율 상향
 - 조명기기는 LED 조명을 포함한 고효율 조명기기 적용으로 사업자의 선택폭을 확대하여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17. 9. 27.(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환경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리라 주무관(☎ 2133-3545, FAX 2133-1019, E-mail : kimlila@seoul.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개정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	2. 구 분						
		신설	○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환경정책과장 이상훈, 환경조정평가팀장 우종학, 담당 김리라)							
4. 근거법령명등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29조제2항				관 련 규제수	8건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해당 규모의 개발사업(건축물,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자 등							
6. 규제존속기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관련 법령 제정시까지							
7.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	붙임 참조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 변경의 필요성

< 규 제 1 > : 대기질 항목

- 노후 건설기계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최근 미세먼지 관련 시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 우리시에서는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공사시 친환경 건설기계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저녹스버너 인증을 득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 규 제 2 > : 온실가스 항목

-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 및 정부의 친환경 미래 에너지 정책 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LED 조명 등 에너지 절약·절감 방안을 강화하였음
 - 민간건축물의 경우 총 에너지사용량의 16%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하되, 신재생 에너지 12% 초과비율은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설계하거나 집단에너지시설, 상수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로 합리적인 에너지 시설 설치를 유도하였음
 - 조명기기는 전량 고효율조명기기를 적용하되, LED조명을 포함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조명으로 사업자의 선택폭을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음
-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감축을 위하여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차단위구획의 5% 이상 전기 인입선 등 충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주차단위구획을 100으로 나눈 수 이상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음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 [별표 12]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기준’이 시행되어 이를 준용하도록 함

< 규 제 3 > : 수질 항목

- 지하수 수질조사 및 토양오염 현황조사에서 지하수의 오염이 확인된 경우 「지하수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오염원인과 오염범위를 검토하고 오염영향과 저감대책 마련이 필요함

< 규 제 4 > : 토양 항목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거 토양을 측정하고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나 사업부지 내 기존 건물(시설물),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철거 후 사업부지 내 토양오염 및 지하수 수질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규 제 5 > : 지형지질 항목

- 공사시 및 운영시 지하개발에 따른 지하수위, 지하수 유출량 및 지하수 흐름 변화를 예측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용을 구체화함

< 규 제 6 > : 동식물 항목

- 기존 식생 보존대책 수립을 위하여 현황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재활용 또는 폐기 등 선정 기준 수립 등 내용의 구체화가 필요함

< 규 제 7 > : 소음진동 항목

- 측정지점 건축물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층고도 함께 제시하도록 구체화함

< 규 제 8 > : 기상 항목

- 미기상 영향 예측시 주변 개발과정 및 계획에 따른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현황조사에 내용을 추가함
- 바람길 영향 분석시 건물 높이 증가 등 사업지구 특성을 반영하여 형식화되는 분석을 지양하도록 함
- 수치화가 가능한 생태면적률을 통해 미기후 변화를 검토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본 심의기준은 우리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객관적이고 신속한 운영을 위해 2005년 최초 고시되었음. 그간 7차례 변경을 거쳐 운영되어 온 바, 사회적 인식과 합의가 되어 있음
-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건설장비, 저녹스 버너 사용, 환경친화적 차량 도입과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및 LED 등 고효율 조명 설치하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공감하여 사회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는 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스스로 도입하고 있는 사항으로 과도한 규제가 아니므로 실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수질,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 소음·진동, 기상 항목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화한 것으로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을 정량·정성적으로 제시한 사항으로 대체수단이 없으며 기존 규제 중복되지 않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해당없음”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본 고시안은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평가내용 및 기준을 구체화 및 수치화하여 객관적으로 제시함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변경안(신·구대조)

☐ 건축물 사업

■ 중점평가항목(11개 항목)

1) 대기질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내용	① 공사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대기질 영향예측	① <좌동> • <u>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각 배출원별 발생량 예측</u> - <u>건설장비별 배출계수는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편람 자료 인용 등</u>
	② 공사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저감대책 수립 • <u>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각 배출원별 발생량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u> - <u>건설장비별 배출계수는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편람 자료 인용 등</u> - <u>공사장내 건설기계 PM-NOx 관리계획 수립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덤프트럭 등 노후 건설기계 사용 자제 및 엔진공회전으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방안 등)</u>	② <좌동> • <u>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저감대책 수립</u> - <삭제>①로 이동 - <u>공사장 내 건설기계는 최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친환경 건설기계 70% 이상 사용</u> • <u>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경유사용 자동차) EURO5 이상, 굴삭기, 지게차(건설기계) Tier3 이상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u>

구 분	현 행	변 경
	③ 운영시 사업지구 내·외부지역 대기질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 유발교통량 및 에너지사용에 따른 영향예측 실시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 난방 등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정 명시) • 유발교통량 및 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정 명시) • 총량규제 대상 여부 및 대기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최적방지시설(BAT) 설치 검토 - 운영시 질소산화물 배출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방안 수립 •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저녹스 버너 인증을 득한 제품 설치 등	③ <좌동> • <좌동> - <좌동> • 난방 등으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정 명시) • 유발교통량 및 이동오염원으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정 명시) • <좌동> - <좌동> •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저녹스 버너 인증을 득한 제품 <u>설치</u>
2) 온실가스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내용	②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 • 신축 건축물은 에너지 관리 향상을 위해 “기본기능 및 가시화, 분석 진단, 관리 및 최적화 제어” 기능이 있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 공동주택의 경우 월별 에너지소비량과 에너지생산량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도입 계획 수립 - 총 주차구획의 5% 이상 주차면 확보 -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완속 충전기는 건물 용도와 충전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계획 검토	②<좌동> • 신축 건축물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u>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u>에 따른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용도(난방, 냉방, 환기, 급탕, 조명, 전기기기 등)별 에너지 계획 시스템 도입 - <좌동> • <좌동> -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면 확보 비율 제시 - 전기 인입선 등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 충전시설의 종류, 수량 등 제시
평가기준	• 산재생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 민간 건축물의 경우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15%	• <좌동>

구 분	현 행	변 경
	이상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12% 초과비율을 아래사항으로 대체 가능 - 에너지총량기준으로 소비량 감축설계시 감축량 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신재생에너지이외 열병합발전, 하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시설(ESS) 등의 시설에서 에너지를 생산 또는 공급 받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공공건축물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급의무비율 이상 - 조명기기 전력 부하량의 90% 이상을 LED로 적용하되 가로등, 보안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으로 대체 가능 • 녹색건축물 예비인증 및 에너지 소비 절약계획서 작성 - 녹색건축물 인증기준에 의한 최우수(그린1등급) 등급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EPI) 검토서의 평점합계 90점 이상 또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다만 건축물의 구조 설계상 90점 이상 또는 1등급 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이를 소명	- 민간건축물의 경우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16% 이상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12% 초과비율을 아래사항으로 대체 가능 - 에너지총량기준으로 소비량 감축설계시 감축량 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신재생에너지이외 열병합발전, 하수열, 상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시설(ESS) 등의 시설에서 에너지를 생산 또는 공급 받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좌동〉 - 조명기기는 LED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100% 적용 (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 조명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사유 제시) -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도입계획 - 주차단위구획의 5% 이상 주차면 확보 - 주차단위구획의 5% 이상 전기 인입선 등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 주차단위구획을 100으로 나눈 수 이상 충전시설 설치 - 충전시설의 10% 이상 급속충전시설 확보(단,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인 경우 충전시설의 50% 이상 급속충전시설 설치) - 녹색건축물 예비인증 및 에너지 소비 절약계획서 작성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따른 최우수(그린1등급) 등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성능지표(EPI) 검토서의 평점합계 90점 이상 또는 「<u>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u>」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다만, 건축물의 구조 설계상 90점 이상 또는 1등급 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이를 소명

3) 수질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내용	②지하수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②〈좌동〉

구 분	현 행	변 경
	- 지하수 관련 현황 파악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하수질 측정 - 지하수 이용현황 조사(환경부, 국토교통부 자료 인용 및 실측 조사 등)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하수질 및 지하수 이용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좌동〉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하수질 측정 - 지하수 이용현황 조사(환경부, 국토교통부 자료 인용 및 실측 조사 등) 〈좌동〉 ※ 지하수 수질조사와 토양오염 현황조사에서 지하수의 오염이 확인된 경우 오염원과 오염범위를 검토하고, 오염영향과 저감대책을 제시
	③ 운영 시 우·오수처리계획 우·오수처리계획은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및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09)”, “하수분야 업무처리지침” 등 최근 관련규정에 의거 분류식 계획지역 해당여부 및 분류식 검토	③ 〈좌동〉 우·오수처리계획은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및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분야 업무처리지침」 등 최근 관련규정에 따라 분류식 계획지역 해당여부 및 분류식 검토
평가기준		지하수 수질현황 및 오염시 오염원, 오염범위 및 저감 대책

4) 토지이용(변경없음)

5) 토양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내용	① 토양오염 현황조사 - 토양오염 현황조사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거 사업지구 면적에 따라 최소 5개 지점 이상에 대한 토양(표토 및 심토 포함 최소 3개 토층) 측정 - 토양오염이 나타난 경우 지하수흐름을 고려하여 상·하류 지하수 수질 검사 실시	① 〈좌동〉 〈좌동〉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및 결과 제시 - 사업부지 내 기존 건물(시설물), 지장물 등으로 전반적인 조사가 어려울 경우 철거 후 사업부지 내 토양오염 및 지하수 수질 조사계획 수립 - 사업지구 내 토양 오염의 개연성을 검토하고 지하수 흐름을 고려한 상·하류 지하수 수질 검사 실시

6) 지형·지질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내용	③ 지하수위 및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공사시 및 운영시 지하개발에 따른 지하수위, 지하수유출량 및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 공사시 및 운영시 지하수위 유지방안 제시 - 지하수위 및 지하수유출량 모니터링계획 수립 (실시횟수, 주기, 구체적인 방법, 지점 등) ④지하 굴착에 따른 지반안정성 검토 - 지하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지반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지반안정성 유지방안 제시 ※ 사업지구 주변으로 지하철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시설이 위치할 경우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에 대하여 전문가 조사	③ <좌동> <좌동> - 사업부지 내·외 지하수 함양률의 변화 검토 - 예측 모델링에 사용한 코드와 적용성, 한계에 대한 설명 제시 - 예측 모델 보정방법을 설명하고 보정 전·후 수리상수(함양률, 수리전도도)의 변화량 검토 <좌동> <좌동> - 착공시점부터 사업부지와 주변의 지하수위 분포 및 흐름 현황 모니터링 - 지하수위 모니터링을 통한 지하수 모델링 검증계획 수립 ④ <좌동> <좌동> ※ 사업지구 주변으로 지하철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시설이 위치할 경우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에 대하여 전문가 조사 및 시설관리기관 협의내용 제시
평가기준		지하수위,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7) 동·식물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내용	②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동·식물 영향 검토	② <좌동>

구 분	현 행	변 경
	• 기존 식생 보존대책 수립 - 보존계획표 제시(이식, 존치 등) - 이식계획 수립시 가이식장 위치 및 관리방안 등 제시	• <좌동> - 사업지구 내 기존 수목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제시(수종, 수량, 규격, 생육상태 등) - 조사 수목에 대한 이식 재활용 또는 폐기 등 선정기준 수립 - 기존 수목 처리(보존)계획표 제시 • <좌동> - 이식 등 재활용 수목을 포함한 조경 식재계획 제시

8) 친환경적 자원순환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 재활용 지침상의 기준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상의 기준

9) 소음·진동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내용	① 정온시설 현황조사 • 사업지역과 측정지점간의 이격거리 및 좌표 표시 ⑤ 공사시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저감대책 수립 • 서울특별시 공사장 소음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2011.4) 이행계획 수립	① <좌동> • <u>사업지역과 측정지점간의 이격거리 및 층고, 좌표 표시</u> ⑤ <좌동> • <u>서울특별시 도시소음관리매뉴얼(2016.8)공사장 이행계획 수립</u>

10) 위락·경관(변경없음)

11) 일조장해(변경없음)

■ 현황조사항목(2개 항목)

1) 기상(미기상 포함)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내용	① 현황조사 • 사업지 주변 미기상 측정자료 제시(주야간) • 주변 건축물 규모 및 개발계획 등 설명 ② 미기상 변화예측 • 기상측정망의 최대풍속(95% 범위) 자료를 활용하여 온도, 습도, 바람(풍향, 풍속)등 국지기상 측정자료와 함께 미기상 변화영향의 예측 및 비교·분석 • 주변지역을 포함한 사업지구 건물입지에 따른 바람길 영향 분석 - 사업지구를 둘러싼 삼각형 꼭지점에 위치한 AWS 자료 및 최소 8방위(동,서,남,북,북동,남동,남서,북서) 풍향에 대한 분석 실시 ③ 보행환경평가 • 미기상 변화 예측결과를 활용한 현상 분석 - 국지적인 풍속 및 온도 변화로 인한 오염농도 증가, 통풍량 감소, 쾌적도 등 분석 - 보행환경 평가는 사업시행 전·후 미기상 변화 수치자료를 활용하여 체감도의 비교분석 및 대안 검토	①<좌동> • <u>사업지 주변 미기상을 대표하고 사업시행의 영향이 경미할 고정측정지점을 선정하여 측정자료 제시(주야간)</u> • <u>주변지역의 미기후 현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동측정 자료 제시 권고</u> • <u>주변 건축물 규모 및 개발과정과 계획 등 설명</u> ② <좌동> • <u>현장측정 자료와 인근 AWS 계절별 자료 등을 이용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미기상 변화 등 영향을 예측하고 현황과 비교·분석</u> • <u>사업지구 건물입지에 따른 바람길 영향 분석</u> - <u>사업지구 건물높이 증가로 인한 국지적 돌풍 완화 분석</u> - <u>주변 지역 풍량 감소를 완화할 수 있는 바람길 영향 분석 수행</u> ③ <좌동> • <좌동> - 사업시행 전·후의 지표면온도, 기온, 상대습도 등 보행 미기후 환경을 비교분석 - 조경 등에 의한 생태면적률 증감 분석과 이로 인한 잠재적인 미기후 변화 비교분석 및 대안 검토

2) 인구·주거(변경없음)

□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 중점평가항목(11개 항목)

1) 대기질

구 분	현 행	변경(안)
평가내용	① 공사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대기질 영향예측	①<좌동> • <u>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각 배출원별 발생량 예측</u> - 건설장비별 배출계수는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편람 자료 인용 등
	② 공사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저감대책 수립 •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각 배출원별 발생량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 건설장비별 배출계수는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편람 자료 인용 등 - 공사장내 건설기계 PM-NOx 관리계획 수립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덤프트럭 등 노후 건설기계 사용 자제 및 엔진공회전으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방안 등)	② <좌동> •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저감대책 수립 - <삭제> - 공사장 내 건설기계는 최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친환경 건설기계 70% 이상 사용 • <u>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경유사용 자동차) EURO5 이상, 굴삭기, 지게차(건설기계) Tier3 이상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u>
	③ 운영시 사업지구 내·외부지역 대기질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 운영시 유발교통량 및 에너지소비에 따른 영향예측 실시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 난방 등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산정과정 명시) • 총량규제 대상 여부 및 대기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최적방지시설(BAT) 설치 검토 - 운영시 질소산화물 배출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방안 수립 •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저녹스 버너 인증을 득한 제품 설치 등	③ <좌동> • <좌동> - <좌동> • 난방 등으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산정과정 명시) • <좌동> - <좌동> • <u>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저녹스 버너 인증을 득한 제품 설치</u>

2) 온실가스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내용	②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 •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도입 계획 수립 - 총 주차구획의 5% 이상 주차면 확보 -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완속 충전기는 건물 용도와 충전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계획 검토	② <좌동> • <좌동> -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면 확보 비율 제시 - 전기 인입선 등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 충전시설의 종류, 수량 등 제시
평가기준	•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 민간 건축물의 경우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15% 이상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12% 초과비용을 아래사항으로 대체 가능 • 에너지총량기준으로 소비량 감축설계시 감축량 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신재생에너지와 열병합발전, 하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시설(ESS) 등의 시설에서 에너지를 생산 또는 공급 받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공공건축물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급의무비율 이상 - 조명기기 전력 부하량의 90% 이상을 LED로 적용하되 가로등, 보안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으로 대체 가능 • 녹색건축물 예비인증 및 에너지 소비 절약계획서 작성 - 녹색건축물 인증기준에 의한 최우수(그린1등급) 등급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EPI) 검토서의 평점합계 90점 이상 또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다만 건축물의 구조 설계상 90점 이상 또는 1등급 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이를 소명	• <좌동> - 민간건축물의 경우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16% 이상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12% 초과비용을 아래사항으로 대체 가능 • 에너지총량기준으로 소비량 감축설계시 감축량 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신·재생에너지와 열병합발전, 하수열, 상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시설(ESS) 등의 시설에서 에너지를 생산 또는 공급 받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좌동> - 조명기기는 LED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100% 적용 (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 조명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사유 제시) •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도입계획 - 주차단위구획의 5% 이상 주차면 확보 - 주차단위구획의 5% 이상 전기 인입선 등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 주차단위구획을 100으로 나눈 수 이상 충전시설 설치 - 충전시설의 10% 이상 급속충전시설 확보(단,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인 경우 충전시설의 50% 이상 급속충전시설 설치) • 녹색건축물 예비인증 및 에너지 소비 절약계획서 작성 -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따른 최우수(그린1등급) 등급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성능지표(EPI) 검토서의 평점합계 90점 이상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다만, 건축물의 구조 설계상 90점 이상 또는 1등급 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이를 소명

3) 수질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내용	② 공사시 및 운영시 지하수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지하수 관련 현황 파악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하수질 측정 - 지하수 이용현황 조사(환경부, 국토교통부 자료 인용 및 실질 조사 등)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하수질 및 지하수 이용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② <좌동> <좌동>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하수질 측정 - 지하수 이용현황 조사(환경부, 국토교통부 자료 인용 및 <u>실측</u> 조사 등) <좌동> ※지하수 수질조사와 토양오염 현황조사에서 지하수의 오염이 확인된 경우 오염원과 오염범위를 검토하고, 오염영향과 저감대책을 제시
	③ 운영시 우·오수처리계획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및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09)”, “하수분야 업무처리지침” 등 최근 관련규정에 의거 분류식 계획지역 해당여부 및 분류식 검토	③ <좌동>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및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분야 업무처리지침」 등 최근 관련규정에 따라 분류식 계획지역 해당여부 및 분류식 검토
평가기준		지하수 수질현황 및 오염시 오염원, 오염범위 및 <u>저감 대책</u>

4) 토지이용(변경없음)

5) 토양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내용	① 토양오염 현황조사 - 토양오염 현황조사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거 사업지구 면적에 따라 최소 5개 지점 이상에 대한 토양(표토 및 심토 포함 최소 3개 토층) 측정	① <좌동> <좌동>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및 결과 제시 - 사업부지 내 기존 건물(시설물), 저장물 등으로 전반적인 조사가 어려울 경우 철거 후 사업부지 내 토양오염 및 지하수 수질 조사계획 수립

구 분	현 행	변 경
	토양오염이 나타난 경우 지하수흐름을 고려하여 상하류 지하수 수질 검사 실시	사업지구 내 토양 오염의 개연성을 검토하고 지하수흐름을 고려한 상하류 지하수 수질 검사 실시

6) 지형·지질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내용	③ 지하수위 및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공사시 및 운영시 지하개발에 따른 지하수위, 지하수유출량 및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 지형현황, 토지이용, 지층구조, 투수계수를 등을 고려한 함양률 적용 분석 - 공사시 및 운영시 지하수위 유지방안 제시 - 유출지하수 재활용계획 수립 ④ 지하 굴착에 따른 지반안정성 검토 - 지하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지반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지반안정성 유지방안 제시 ※ 사업지구 주변으로 지하철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시설이 위치할 경우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에 대하여 전문가 조사	③ <좌동> <좌동> - 사업부지 내·외 지하수 함양률의 변화 검토 - 예측 모델링에 사용한 코드와 적용성, 한계에 대한 설명 제시 - 예측 모델 보정방법을 설명하고 보정 전·후 수리상수(함양률, 수리전도도)의 변화량 검토 <좌동> <좌동> - 지하수위 및 지하수유출량 모니터링 계획 수립 - 착공시점 사업부지와 주변의 지하수위 분포 및 흐름 현황 모니터링 - 지하수위 모니터링을 통한 지하수 모델링 검증계획 수립 ④ <좌동> <좌동> ※ 사업지구 주변으로 지하철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시설이 위치할 경우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에 대하여 전문가 조사 및 시설관리기관 협의내용 제시
평가기준		지하수위,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7) 동·식물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내용	④ 수목 식재계획 수립 • 공공시설(공원, 놀이터 등), 보호수(노거수) 등 기존수목에 대한 조사결과(이식, 보존가치 등)를 제시하고, 처리계획 수립(이식, 보존, 기증, 재활용 등) - 보존계획표 제시(이식, 존치 등) - 이식계획 수립시 가이식장 위치 및 관리방안 등 제시	④ <좌동> • <좌동> - 사업지구 내 기존 수목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제시(수종, 수량, 규격, 생육상태 등) - 조사 수목에 대한 이식 재활용 또는 폐기 등 선정기준 수립 - 기존 수목 처리(보존)계획표 제시 - <좌동> - 이식 등 재활용 수목을 포함한 조경 식재계획 제시

8) 친환경적 자원순환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 재활용 지침상의 기준	• 「 <u>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u> 」 상의 기준

9) 소음·진동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내용	① 정온시설 현황조사 • 공사 및 운영시 소음·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조사 - 사업지역과 측정지점간의 이격거리 및 좌표 표시 ⑤ 공사시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저감대책 수립 • 서울특별시 공사장 소음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2011.4) 이행계획 수립	① <좌동> • <좌동> - 사업지역과 측정지점간의 이격거리 및 층고, 좌표 표시 ⑤ <좌동> • <u>서울특별시 도시소음관리매뉴얼(2016.8)공사장 이행계획</u> 수립

10) 위락·경관(변경없음)

11) 일조장해(변경없음)

■ 현황조사항목(2개 항목)

1) 기상(미기상 포함)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내용	① 현황조사 • 사업지 주변 미기상 측정자료 제시(주야간) • 주변 건축물 규모 및 개발계획 등 설명	① <좌동> • <u>사업지 주변 미기상을 대표하고 사업시행의 영향이 경미할 고정 측정지점을 선정하여 측정자료 제시(주야간)</u> • <u>주변지역의 미기후 현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동측정 자료 제시(예. 이동차량관측)</u> • <u>주변 건축물 규모 및 개발과정과 계획 등 설명</u>
	② 미기상 변화예측 • 기상측정망의 최대풍속(95% 범위) 자료를 활용하여 온도, 습도, 바람(풍향, 풍속) 등 국지기상 측정자료와 함께 미기후 변화영향의 예측 및 비교·분석 • 주변지역을 포함한 사업지구 건물입지에 따른 바람장 영향 분석	② <좌동> • <u>현장 측정자료와 인근 AWS 계절별 자료 등을 이용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미기상 변화 등 영향을 예측하고 현황과 비교·분석</u> • <u>사업지구 건물입지에 따른 바람길 영향 분석</u> - 사업지구 건물높이 증가로 인한 국지적 돌풍 완화 분석 - 사업지구 및 주변의 풍량 감소를 완화할 수 있는 건물들의 배치 및 바람길 영향 분석
	③ 보행환경평가 • 미기상 변화 예측결과를 활용한 현상 분석 - 국지적인 풍속 및 온도 변화로 인한 오염농도 증가, 통풍량 감소, 쾌적도 등 분석 - 보행환경 평가는 사업시행전·후 미기상 변화 수치자료를 활용하여 체감도를 비교 분석하되 보행자 높이에서 온열환경 변화 검토	③ <좌동> • <좌동> - <u>사업시행 전·후의 지표면온도, 기온, 상대습도 등 보행 미기후 환경을 비교분석</u> - <u>조경 등에 의한 생태면적률 증감 분석과 이로 인한 잠재적인 미기후 변화 비교분석 및 대안 검토</u>

2) 인구·주거(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970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1) 다단계판매업 변경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주)에이필드	서울-제833호	명충남 이종현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23층(남대문로5가, 서울시티타워) (1833-5002)	소재지 (‘17.07.29)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 1401호 (만리동1가, 스카이1004빌딩)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23층 (남대문로5가, 서울시티타워)
(주)더블유디 실크로드	서울-제836호	박호재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33, 4층 (역삼동, 연안이씨빌딩) (1833-6179)	소재지 (‘17.08.11)	(주)엘티넷	(주)더블유디 실크로드

2) 후원방문판매업 변경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케이씨씨판매 광진지사	서울 후-제514호	차증임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63, 2층 218,219,229호(구의동) (02-453-2304)	소재지 (‘17.07.08.)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5, 2층(구의동)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63, 2층 218,219,229호(구의동)

3) 다단계판매업 폐업사항

신 고 인				신고사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폐업일자	폐업사유
(주)리브엘리트 코리아	서울 - 제845호	위은혜 (미국)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17, 10층(삼성동, 찬이빌딩) (02-542-1131)	‘17.08.04.	공제조합해지

4) 후원방문판매업 폐업사항

신 고 인				신고사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폐업일자	폐업사유
이든네이처 (도봉방학지사)	서울 후- 제332호	김종우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53길 26, 2층(도봉동) (02-954-9448)	'17.08.29.	방문판매 전환
마임쌍문지사	서울 후- 제69호	박영식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33길 20, 3층(쌍문동) (02-906-8323)	'17.08.30.	개인사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17) 또는 공정경제과(☎ 02-2133-5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971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에 관한 등록 및 말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장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현황

연번	상 호	대표자	등록/말소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천원) /폐업사유	비 고
1	(주)수진종합건설	차주환	2017.08.25	서울170084	강서구 금남화로 60-3, 501호,601호 (방화동, 수진타워)	530,000	신규등록
2	(주)원디앤에스	엄태응	2017.08.25	서울170085	강남구 봉은사로105길 12-11,3층 (삼성동, 평화빌딩)	500,000	신규등록
3	(주)디허브	권왕석	2017.08.25	서울170086	강남구 테헤란로28길 11, 5층 (역삼동, 성보빌딩)	300,000	신규등록
4	(주)디에스디엔씨	김영철	2017.08.28	서울170087	서초구 강남대로61길 3 (서초동, 대승빌딩)	500,000	신규등록
5	(주)이테크건설	이복영 안찬규	2017.08.30	서울170088	서초구 탑성말길 18(염곡동)	14,000,000	신규등록

연번	상 호	대표자	등록/말소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천원) /폐업사유	비 고
6	㈜필건설	이승준	2017.08.02	서울160078	서초구 동광로 56-9, 201호 (방배동, 보우빌딩)	사업종료	폐업
7	㈜프리즘파트너즈	김성준	2017.08.08	서울170061	강남구 테헤란로 311, 1521호 (역삼동)	전문인력부족	폐업
8	㈜이순종합건설	차재운	2017.08.08	서울160059	성북구 동소문로32길 7-3, 201호(동선동3가)	전문인력부족	폐업
9	㈜거목산업	임거목	2017.08.09	서울170083	강남구 언주로30길 13, 1403호 (도곡동, 대림아크로텔)	사업종료	폐업
10	㈜비에이월드	이청목	2017.08.23	서울140037	송파구 법원로 114, 비동 609호 (문정동, 엠스테이트)	사업종료	폐업
11	광명산업개발㈜	김상연	2017.08.28	서울160023	서초구 서초대로 254(서초동)	기타	폐업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2133-4684~4686)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984호

「서울특별시 OO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OO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과 관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우리시의 주민자치 여건을 반영하고, 자치구의 효과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OO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주민자치회의 설치, 기능 및 정원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5조)

나.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선정방법, 임기, 위촉 및 해촉 등 주민자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제12조)

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제19조)

라. 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0조~제21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2조~제23조)

3. 의견제출

이 표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2133-5814, FAX: 2133-0778, E-mail: nahj@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표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OO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2장 주민자치회의 설치

제3조(설치)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주민자치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4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서울특별시 OO구 주민참여예산조례」 제OO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들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에 개선을 건의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구청과 협의하는 업무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정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정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6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위원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자치구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선정위원회를 처음 구성할 때에는 제2호의 위원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청장 추천 공무원 2명 이내
2. 주민자치회 추천 민간인 2명 이내
3.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자 3명 이내
- ③ 위원선정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해당 자치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이미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법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그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제8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위원선정위원회가 공개추첨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추첨하고, 각 호별로 5명 이하의 예비자를 순위를 정하여 공개추첨한다. 다만, 위원이 될 사람은 각 호별로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며 40대 이하가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추첨하여야 한다.
1. 정원의 100분의 60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2. 정원의 100분의 40은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첨된 사람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제3항의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한다.
- ⑤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자가 없으면 제2항에 준하여 공개추첨하여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않는다.
- ⑥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그 위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과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하고, 제0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1곳 이상 참여하며,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그 위

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위원이 제8조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경우
- ②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그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 제13조(운영원칙)**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여 주민이 스스로 지역을 꾸려나가도록 자치활동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② 주민자치회는 각 동마다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남은 임기 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 제15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그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명을 두며, 그 가운데는 외부감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주민자치회는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6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③ 자치회장은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동 주민으로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8조(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에게 동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 ⑥ 그 밖의 회의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 평가 및 의견 제시
 3. 자치계획의 결정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선정
 5. 기타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 ②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 ⑤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자치구 및 동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자치계획

제20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여야 한다.

- ③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 ⑤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21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 2. 동정 평가와 의견을 포함한 동 행정사무 협의 계획
-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 4. 자치회관 운영계획
- 5. 분과별 사업계획
- 6.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6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지원 및 공간 지원 기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주민자치회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요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제7장 보칙

제24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5조(보험) 구청장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권한은 그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7-6호

재 산 등 록 사 항 공 개 공 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수시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	서울에너지공사		직위	성명	박진섭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액)	(단위 : 천원)	
▶ 건물(소계)					
본인	아파트 전세 (임차)권	(국외)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97길20, 509동 104호(강일동, 강일리버파크) 건물 84.83㎡	33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본인	자동차	2015년식 투싼(TUCSON) 배기량(1,995cc)	23,477		
▶ 예금(소계)					
본인		중소기업은행 1, 우리은행 10,500, KB증권 2,141,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 ING(네덜란드)생명보험 18,727	58,269		
배우자		국민은행 4,431, 디지털생명보험(주) 6,600,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4,201, 우리은행 709, 경남은행 3, ING(네덜란드)생명보험 10,479	31,370		
장남		신한은행 414, 우리은행 62	26,423		
▶ 채무(소계)					
본인	금융기관채무	우리은행 264,060	476		
총 계			264,060		
			147,68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소속	직위			성명	김재열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본인	답	전라남도 보성군 화진면 객산리 365번지 1,285.00㎡	5,731	0	0	5,731
▶ 건물(소계)						
본인	복합건물 (주택+상가)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2동 유명고시원 건물 292,000.00㎡	58,000	0	0	58,000
본인	복합건물 (주택+상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1동 대지 241.00㎡ 중 6.61㎡ 건물 4,055.00㎡ 중 19.40㎡	62,631	0	0	62,631
본인	복합건물 (주택+상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1동 대지 241.00㎡ 중 6.61㎡ 건물 4,055.00㎡ 중 35.00㎡	62,361	0	0	62,361
본인	복합건물 (주택+상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1동 대지 241.00㎡ 중 50.16㎡ 건물 4,055.00㎡ 중 69.96㎡	469,964	0	0	469,964
본인	복합건물 (주택+상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1동 삼익상가 대지 106.83㎡ 건물 610.69㎡	1,119,550	0	0	1,119,550
본인	복합건물 (주택+상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1동 노량진빌딩 대지 241.00㎡ 중 44.45㎡ 건물 4,055.00㎡ 중 63.36㎡	487,691	0	0	487,691
본인	복합건물 (주택+상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1동 노량진빌딩 대지 241.00㎡ 중 67.05㎡ 건물 4,055.00㎡ 중 93.50㎡	626,686	0	0	626,686
배우자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대지 132.20㎡ 건물 232.81㎡	712,956	0	0	712,956
배우자	단독주택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건물 72.00㎡	30,000	0	0	3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6,000	0	0	36,000	
본인	자동차	2015년식 싼타페 배기량(1,995cc)	-	-	32,000	변동없음
본인	자동차	2016년식 엑티언 배기량(2,000cc)	-	-	4,000	변동없음
▶ 예금(소계)		275,885	21,265	8,488	288,662	
본인		현대해상화재보험 8,472(861 증가), 농협생명보험 5,660(320 증가), 흥국생명보험 6,072, 삼성생명보험 86,599(4,932 증가), 우리은행 240(442 감소), 중소기업은행 821, 신한은행 15(17 감소), 새마을금고 14,081(3,998 감소), 우체국 21,473(859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25(3 증가), (주)KB손해보험 9,340(1,125 증가), 농협은행 6(61 감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6,384, 농협중앙회 8, 국민은행 60(832 감소), 노량진 49(1 증가), 노들 10,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26(20 감소)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15, 수협은행 13,847(3,228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부 3,944(640 증가), 한화투자증권 0(4 감소), 노들 27(83 감소), 스탠다드차타드은행 3, 현대해상화재보험 8,319(743 증가), 국민은행 771(721 감소), 노량진 23(1 증가), 삼성생명보험 20,303(1,423 증가), 우체국 7,382(887 증가), 신한은행 63(9 감소), 중소기업은행 209, 상도 90(2 증가), (주)KB손해보험 2,200(500 증가), 신대방1 동 89(280 감소), 동작신협 0(11 감소), 새마을금고 9,337(717 증가), 우리은행 517(51 감소), 농협은행 91(632 감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0(3 감소), 농협생명보험 3,498(160 증가), 교보생명보험 31,800(2,094 증가)				
장남		신한은행 89(83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179(100 증가), 삼성생명보험 25,730(1,913 증가), 국민은행 2, 우리은행 20, 스탠다드차타드은행 467(386 증가), 농협은행 0(195 감소)				
장녀		(주)KEB하나은행 5(133 감소), 농협중앙회 51(43 증가), 우리은행 20				
차녀		중소기업은행 10, 우리은행 20, 농협은행 0(752 감소)				
		93,927	10,471	1,870	102,528	적립식 금융상품 가액 증가
		24,200	2,483	196	26,487	
		166	43	133	76	
		782	0	752	30	

▶ 채무(소계)		2,414,331	0	26,438	2,387,893	
본인	금융기관채무	126,023	0	13,778	112,245	원리금 및 이자상환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1,772,308	0	12,660	1,759,648	원리금 및 이자상환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500,000	0	0	500,000	변동없음
장남	기타	16,000	0	0	16,000	변동없음
총 계		1,533,124	21,265	-17,950	1,572,339	증감액 : 39,215천원

구 고 시

◆ 강북구고시 제2017-11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중복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56번지 수송초등학교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강 북 구 청 장

가. 결정취지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는 수송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중복 결정코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중복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주차장	강북구 한천로124길 14	-	증)3,667	3,667	-	도시계획시설(학교)에 지하주차장 중복 결정 (지하1층, 2층)

다. 관계도면 : 붙임 참조(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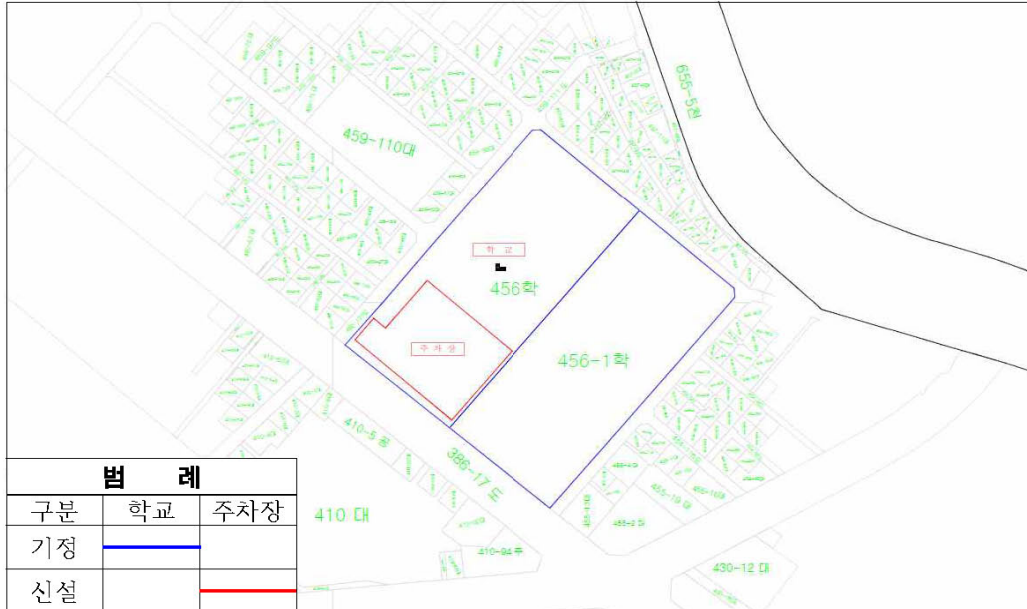
※ 붙임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901-6846), 주차관리과(☎ 901-5953)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n.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도

1. 수송초등학교



◆ 강북구고시 제2017-118호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381호(1982.9.20)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서울시 고시 제2008-428호(2008.11.2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공원) 결정으로 공원결정 및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32호(2013.12.19)로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7-217호(2017.03.02)로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7-44호(2017.03.30)로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한 오동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인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북구청 푸른도시과(☎ 901-692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 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17년 9월 7일
강 북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 강북구 번동 산23-29번지 외 8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2017년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조성)사업
다. 사업의 내용 : 공원 조성(토지보상)
라. 규모 변경 : 당초 - 토지보상 20,683㎡ → 변경 - 12,550㎡ (감 8,133㎡)
마. 사업의 시행자 : 강북구청장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2년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및 물건조서 : 별첨 조서
아. 토지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조서
자. 열람장소 :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공원녹지과(901-6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2017년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조성)사업
(변경전)

연 번	소 재 지	지 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지 분	이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관 리 의 내 용	
4필지			55,310	20,683								
1	반 동 산23	임 야	13,604	6,058			강 남 구 삼성 로 14435 동 101 호 (개 포 동 주 공 아 파 트)	박 재 금	전 라 남 도 곡 성 군 옥 곡 면 대 학 로 142	옥 곡 농 업 협 동 조 합	근 저 당 지 상 권	
2	미 아 동 산 25-1	묘 지	33,676	10,885	2분의1 2분의1		성 동 구 성 수 동 1 가 685-696 갤 러 리 아 포 레 102-1302	이 영 환				
					2분의1		중 로 구 구 기 동 154-3 건 덕 빌 라 씨 동 103 호	이 재 환				
3	미 아 동 산 25-16	묘 지	86	15	2분의1 2분의1		성 동 구 성 수 동 1 가 685-696 갤 러 리 아 포 레 102-1302	이 영 환				
					2분의1		중 로 구 구 기 동 154-3 건 덕 빌 라 씨 동 103 호	이 재 환				
4	미 아 동 산 25-22	묘 지	7,944	3,725	2분의1 2분의1		성 동 구 성 수 동 1 가 685-696 갤 러 리 아 포 레 102-1302	이 영 환				
					2분의1		중 로 구 구 기 동 154-3 건 덕 빌 라 씨 동 103 호	이 재 환				

(변경후)

연 번	소 재 지	지 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지 분	이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 리 의 내 용	
1	9필지 변동 산23-29	임야	12,550	12,550								
					강남구삼성로14435동101호 (개포동주공아파트)	박재금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대학로 142	옥과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2	미아동 산25-56	묘지	370	370	2분의1		성동구성수동1가685-696 갤러리아포레102-1302	이영환				
					2분의1		종로구구기동154-3건덕빌라 씨동103호	이재환				
3	미아동 산25-57	묘지	952	952	2분의1		성동구성수동1가685-696 갤러리아포레102-1302	이영환				
					2분의1		종로구구기동154-3건덕빌라 씨동103호	이재환				
4	미아동 산25-59	묘지	6,084	6,084	2분의1		성동구성수동1가685-696 갤러리아포레102-1302	이영환				
					2분의1		종로구구기동154-3건덕빌라 씨동103호	이재환				
5	미아동 산25-61	묘지	80	80	2분의1		성동구성수동1가685-696 갤러리아포레102-1302	이영환				
					2분의1		종로구구기동154-3건덕빌라 씨동103호	이재환				

연 번	소 재 지	지 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지 분	이 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 리의 내 용	
6	미아동 산25-65	묘지	507	507	2분의1		성동구성수동1가685-696 갤러리아포레102-1302	이영환				
					2분의1		종로구구기동154-3건덕빌라 씨동103호	이재환				
7	미아동 산25-66	묘지	15	15	2분의1		성동구성수동1가685-696 갤러리아포레102-1302	이영환				
					2분의1		종로구구기동154-3건덕빌라 씨동103호	이재환				
8	미아동 산25-67	묘지	220	220	2분의1		성동구성수동1가685-696 갤러리아포레102-1302	이영환				
					2분의1		종로구구기동154-3건덕빌라 씨동103호	이재환				
9	미아동 산25-68	묘지	1,547	1,547	2분의1		성동구성수동1가685-696 갤러리아포레102-1302	이영환				
					2분의1		종로구구기동154-3건덕빌라 씨동103호	이재환				

◆ 도봉구고시 제2017-108호

도시계획시설(초안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 7. 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되고,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4-51호(2014. 2.1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4호(2014. 3.16.)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한 도봉구 창동 산192번지 일대 초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 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02-2091-37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9월 7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산192외 1필지

나.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초안산근린공원 조성

라. 사업의 규모 및 내용(변경)

- 면 적 ┐ 지정 14,795㎡
- └ 변경 11,682㎡ (감3,113㎡)
- 내 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 및 물건의 보상

마. 사업기간(변경 없음) : 실시계획 인가일로 부터 2019. 12. 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 따로 붙임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2091-375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조서 각 1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변경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지적 (㎡)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지 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기정			14,795	11,682						
	변경			14,795	11,682						
1	기정	창동 산192	임야	7,674	7,674	한정모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83, 109동 601호(문정동, 문정래미안 아파트)	7.2/22			
						한정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62, 335동 602호(잠실동, 트리지움)	5.2/22			
						한인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88, 133동 3201호(잠실동, 레이크 팰리스)	2.2/22			
						한인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213번길 19, 202동 3104호(정자동, 아이파크 분당)	2.2/22			
						한정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 218동 2802호(신천동, 파크리오)	5.2/22			
	변경	창동 산192	임야	6,612	6,612	한정모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83, 109동 601호(문정동, 문정래미안 아파트)	7.2/22			
						한정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62, 335동 602호(잠실동, 트리지움)	5.2/22			
						한인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88, 133동 3201호(잠실동, 레이크 팰리스)	2.2/22			
						한인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213번길 19, 202동 3104호(정자동, 아이파크 분당)	2.2/22			
						한정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 218동 2802호(신천동, 파크리오)	5.2/22			

연번	변경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지적 (㎡)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지 분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2	기정	창동 산156-1	임야	7,121	7,121	윤명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9길 28, 401호(신사동)	6/12				
						윤광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49, 에이동2902호(정자동, 로얄헬리스)	4/12				
						윤은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406동601호(구미동,까치마을)	1/12				
						윤성원	미합중국 61109 일리노아주 록휘드시 어함코트 3167	1/12				
	변경	창동 산156-1		5,070	5,070	윤명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9길 28, 401호(신사동)	6/12				
						윤광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49, 에이동2902호(정자동, 로얄헬리스)	4/12				
						윤은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406동601호(구미동,까치마을)	1/12				
						윤성원	미합중국 61109 일리노아주 록휘드시 어함코트 3167	1/12				

물건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권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명			
1 창동 산192	부속건물	과일창고	집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산192	양순자	주 소	성명	권리의 내용
			배 저장고	35㎡					
			콘테이너	22㎡					
				17㎡					
	수목	사과나무	R14cm	1주					
			R15cm	2주					
			R21cm	1주					
			R24cm	1주					
		복숭아나무	R10cm	2주					
		장미	R5cm	10주					
		라일락	R5cm	1주					
		주목	Rcm	1주					
		체리	R5cm	2주					
		매실	R5cm	2주					
		포도	R5cm	2주					
	간이화장실	아시아베리	R5cm	1주					
		왕대추	R5cm	1주					
		두릅	7년생	150주					
		인동	R5cm	200주					
		등나무	R5cm	30주					
		덩굴장미	R5cm	10주					
		사철나무	R5cm	9주					
	간이화장실	슬레이트, 목재	1.2m×2m	1개					
	수도시설	1m×1m	1개						
		소독시설	1개						
	고무물통	소독시설	4개						
		농기계	합판,간이시설1.6m×3m	1개					
	박스창고	2.6m×3m	1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권		이해관계인			비고
1	창동 산192	울타리	쇠말뚝	42개	총연장 204M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산192	양순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0다길 51, 108동501호(창동,태 영대시앙아파트)	이상길	베나무 소유권 주장	
			H빔	3개							
			철문	2개							
		수목	베나무	R3cm~50cm	221주						
2	창동 산156-1	부속 건물	벽돌건물		22㎡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산 156-1	양철봉				
			벽돌건물		81.3㎡						
			공작물	3.2m×5m	1개						
		간이화장실	1.4m×1.6m		1개						
			관정		1개						
		수목	베나무	R8cm~50cm	362주	서울시 도봉구 창동 산156-1	양철봉	지분	85/10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9길 28, 401호 (신사동)	윤명배		15/100*6/1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49, 에이동2902호 (정자동,로알텔리스)	윤광배		15/100*4/1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06동601호 (구미동,까치마을)	윤은자		15/100*1/12		
						미합중국 61109 일리노이주 룩워드시 어함코트 3167	윤성원		15/100*1/12		

◆ 관악구고시 제2017-65호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10812(2017.08.29)호로 온천공보호구역지정 승인된 우리구 봉천동 (온천동) 951-25번지를 「온천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된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7조를 준용하여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관 악 구 청 장

○ 온천공보호구역 조서

구 분	온천공보호구역명	위 치	면 적	구역지정일	비 고
지 정	봉일스파랜드 온천공보호구역	봉천동 951-25번지	4,141.5㎡	2017.09.	

2. 관계도서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해 관계도서 및 세부내용은 관악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서초구고시 제2017-94호

도시계획시설(말죽거리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09)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8호(2017.07.13)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된 말죽거리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9월 7일

서 초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산57-35번지
(변경내용 : 양재동 산57-1번지에서 토지분할)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조성사업
 나) 사업의 명칭 : 말죽거리근린공원 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및 내용(변경 없음)
 가) 면적 : 2,290㎡
 나) 내용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가) 성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6)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변경 내용 :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추가)

붙 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1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 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계		2,290	2,290							
1	양재동 산57- 35	임야	2,290	2,29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7길 14 1층(양재동, 옥천빌딩)	주식회사 호주건설		케이비 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수탁자	

◆ 강남구고시 제2017-12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세곡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건설교통부고시 제465호(1971.8.7)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138호(1977.7.9)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8호(2015.2.12.)로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91호(2011.7.1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4호(2017.3.9.)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세곡근린공원)에 대하여 강남구 공고 제2017-1361호(2017.7.27.)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한 강남구 자곡동 산48-15번지 일대 세곡근린공원

조성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산48-15번지 등 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사업의 명칭 : 세곡근린공원 조성(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훼손지복구사업 2단계, 토지 보상)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공원면적 103,449㎡ 중 1,93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논현동, 서울지역본부)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7.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명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자곡동	산48-15	임	1,911㎡	1,911㎡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동대문구 이문동 207-1
2	자곡동	574-4	잡	23㎡	23㎡		
3	세곡동	산50-16	임	6,301㎡	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공원녹지과(☎3423-6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7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49-7	강서구 개화동 174-1	선박 3척 (기선1척, 부선2척)	정박대기	2017.09.01. ~ 2017.09.08.	2017. 08.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8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49-7	강서구 개화동 174-1	선박 2척 (부선 2척)	정박대기	2017.09.01. ~ 2017.09.30.	2017. 08.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8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계내 한강 (양화대교)	교무보트 1척	양화대교 정밀안전진단	2017.09.01.~ 2017.09.30.	2017. 08.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8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계내 한강 (동작대교)	선박 2척	동작대교 보수공사	2017.09.09.~ 2017.11.12.	2017. 09.0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8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청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계내 한강 (한남대교)	선박 2척	한남대교 보수공사	2017.09.08.~ 2017.11.06.	2017. 09.01.

사업소공고

◆ 강북소방서공고 제2017-10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강 북 소 방 서 장

등록번호	업 종(분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제 서울(강북)- 2017-0002호	소방시설관리업	이강소방 아이앤씨 (***-**-****)	이 강 준 (****.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20가길 40, 406호(미아동)	2017. 8. 28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소방서 예방과(☎ 02-6946-021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183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6층(공덕동, 지방재정회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붙임
 - 면 적 : <당초> 750㎡(일시 40㎡)
 <변경> 804㎡(일시 50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기금조성용 지주이용광고물 이설 설치
 - 내 역 :

당 초	변 경
- 지주 이용 광고물 설치 14개소	- 지주 이용 광고물 설치 14개소 * 1개소 위치 이동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4.07.17.~2019.07.16.(변경허가일로부터 30일)

<붙임>

점 용 위 치

연번	위치		광고면 크기(m)		광고물 높이(m)		점용면적(㎡)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750	804	
1	강남구 삼성동 81-1	좌동	17×8	좌동	29.4	좌동	45	좌동	완료
2	강남구 압구정동 388	"	17×8	"	27.5	"	50	"	"
3	서초구 잠원동 115	"	17×8	"	18	"	50	"	"
4	동작구 동작동 316-1	"	17×8	"	23	"	50	"	"
5	영등포구 여의도동 87-5	"	17×8	"	30.3	"	58	"	"
6	동작구 노량진동 322-1	"	17×8	"	25.2	"	45	"	"
7	동작구 노량진동 320-1	"	17×8	"	30	"	45	"	"
8	영등포구 여의도동 87	"	17×8	"	30	"	66	"	설치중
9	영등포구 양화동 163-10	"	17×8	"	33.5	"	50	"	완료
10	영등포구 양화동 1-5	"	17×8	"	28	"	54	"	"
11	영등포구 여의도동 2-10	"	17×8	"	30	"	67	"	설치중
12	영등포구 여의도동 8	"	17×8	"	32.4	"	50	"	완료
13	영등포구 여의도동 63	"	17×8	"	30.5	"	66	"	"
14	영등포구 당산동 94-14, 91-29	"	17×8	"	31	"	54	"	삭제
14	동작구 노량진동 320-1	"	-	17×8	-	30	-	108 (일시501)	추가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